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총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구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서구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296	2	24	60	87	84	39
	296	2	21	60	129	15	69
보 건	28			2	7	10	9
	27			2	10	5	9
행정·보건· 환경·통신	1		1				
	1			1(보건)			

○ 2004년 4월이후 인사운영 회수 : 14회 186명

○ 2005년 인사운영 회수 : 23회 404명

○ 지방공무원법 제26조(결원보충방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결원의 적기보충)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서구 총무과 정현원 통계표에 의하면 문화공보실(예술진흥팀장)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건축허가과(건축행정팀장) 행정6급 3직위와 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보건6급1 직위가 감사일 현재 결원으로 확인 되었다

- 문화공보실(예술진흥팀장)은 2005.5.19일자로 정원이 신설되었으며, 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보건6급 1직위는 2005.8.12일자로 ○○○(보건6급)가좌1동장 지정대리로 보직발령후부터 현재까지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건축허가과(건축행정팀장2006.2.20) 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2006.2.13)이후부터 결원으로 확인 되었다
- 2005년까지 서구청 인사운영 현황에 의하면 총 23회 404명에 대하여 승진·전보 인사를 하였으나 6급 결원직위에 대한 승진임용 검토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결원을 유지하는등 인력운영해오고 있다

[처 분 요 구]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결원이 적기에 충원되어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총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1. 서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개정 지연

○ 인천광역시에서는 총무과-19629(2004.12.7)호로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 개정 이첩시달”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표준안을 시달하면서 조속히 개정.시행토록 촉구하였으나 남동구 총무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서구 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개정을 지연하고 있다

### 2. 보직관리(전보)기준 심의에 관한사항

○ 지방공무원을 임용배치함에 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민원업무담당하는 공무원1년6월 감사.법무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시.도에서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보좌기간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월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9.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 관련규정에 적합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이유없이 사전전보 배치하는등 보직관리기준을 위배하여 전보조치 하였다

### 3. 인력운영에 관한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23조(직위의 정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서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정원에 맞게 현원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별첨 현황과 같이 조무직렬 (과원 : 문화공보실 1, 교통행정과 1, 결원: 총무과 1,민원봉사과 1,건설과1, 지적과1, 검단출장소2, 가정2동1)과 운전직렬 (과원 : 보건소 1명, 결원 :재무과1)은 과원과 결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기능기계1,검단출장소 기능전기1와 부구청장실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기능전산1명은 교통행정과에 결원을 유지하면서 정원도 없는 총무과에서 2005.5.23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등 인력관리에 부적정 하였다

#### [처 분 요 구]

서구 총무과에서는 「서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시고 직원을 전보조치함에 있어 인사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인력운영하시기를 바라며 과원인 직렬과 직렬불부합 자 들은 인사전보를 통하여 해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징계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2004.6.25 “서구 석남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인천광역시서구일상감사업무처리예규 제1조 내지 제4조에 의거 건설·건축공사의 경우 사업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구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 사후 감사로서는 감사의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적·예방적 지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음에도 사업비 115,742천원의 건축공사임에도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발주하였고
- 국가를상대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건설공사감독자의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시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사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한 사실과 증축공사 완공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현장 작업일지, 공사감독일지, 공사감독조서등을 첨부하여 청구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로
- 2005.6.13일자로 2005년 제12회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심의 하면서 행정주사 이명용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성실의 의무 위반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별표1을 적용하여 경징계(견책)로 요구하여 같은규칙 제4조 제1항규정을 적용 표창감경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의결 하였고
- 행정주사보 ○○○○ 대하여는 성실의 의무 위반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별표1을 적용하여 경징계(견책)로 요구하여 같은규칙 제4조 제2항 규정을 적용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전 인사위원이 인정하여 그 정상을 참작 불문경고로 의결 하였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시행지침 제5조(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관련비위)에 의하면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감경대상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다음 각호에서 예시한 것과 같다

1. 행정처리상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건 관련 징계의결 회의록에 의하면 ○○○은 과실이 인정되어 표창으로 감경하여 주었으며 행정7급 안영신은 모범공무원(구청장)표창이 있으나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자 평소에 성실히 근무하였고 업무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업무를 모르고 미숙해서 발생한 건이라고 하여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관련 비위로 인정 징계를 감경하였으나

○ 이는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비롯된 사안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대상에 포함 된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는등 업무처리 하였다

#### [처 분 요 구]

○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총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징계

[제 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현 황]

- 2005 상반기,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비교표 별첨
- 근무성적평정단위
  - 5 급 : 개별평정단위가 없이 통합평정
  - 6 급이하 : 5개 평정단위
    - 의회, 기획감사실, 보건소
    - 복지환경경제국
    - 동사무소
    - 총 무 국
    - 도시건설교통국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법제76조(근무성적평정) 같은법 임용령 제3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에 대하여 매년6월30일, 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여야 하며, 근무실적은 근무 성적 50%, 경력30%,교육훈련 20% 합쳐 총 100%로 구성 운영하며
- 근무성적평정 절차는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실적평정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정자와 협의하여 실적·능력·태도평정결과등을 기초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며
- 이때 평정등급 및 평정점은 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서열만 정한다  
실적·능력·태도평정결과를 합하여 산출한 종합평정점에 의하여 1차서열을 정하고 평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감안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최종 서열을 결정 하게되어 있다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는데도 직원들의 평정단위별 서열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임의로 순위를 변경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있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하였다

#### [처 분 요 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개인에게 열람을 불허하는 만큼 근무성적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는 평정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감독자, 담당자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검암.경서동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검암.경서동 신축이전에 관한사항

[위법부당내용]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자
집기류(3층)제작 구입	03.7.24	03.9.22	11,960	○○○
사무실(1층)제작 집기류 구입	03.7.11	03.9.20	18,056	○○○
민원대 설치공사	03.7.11	03.9.20	9,960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사의 수의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 2200.04-139, 2000.7.30)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서구 검암경서동사무소에서는 신축청사에 대하여 1층 사무실과 3층 대회의실 집기류 구입 관련하여 당해사업은 이미 계획에 의거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없고 또한 공사성격이 달라서 사업

별로 구분하여 설계 및 발주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당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의뢰 하므로써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결과적으로 입찰 대상인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하므로써 타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 검암경서동 문서제독 사업명 변경(41344-676(03.7.10)) 공문에 의하면 검암 경서동 신축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1층 집기류 물품구입에 필요한 사업명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입한다고 자체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나 이는 기획감사실 승인사항으로 인테도 임의로 예산과목 『자산및물품취득비』 모빌랙(3연7단) 예산액 6,790,000원을 직원이동서랍, 보조책상, 직원의자, 서류함, 원탁의자, 열쇠보관함, 월중행사표로 구입예산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출하는등 업무처리 부적정 하였다

#### [처 분 요 구]

검암.경서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한 회계담당과 동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나 위 건이 감사범위대상기간을 도래한 건으로 금번에 한하여 엄중 주의촉구 하니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한 사항

[현 황]

총 인 원	시설관리	경비	청소	매점관리	사무보조
166	33	14	57	1	11
	수영강사	헬스강사	영양사	청소년지도사	주차관리원
	11	2	1	6	10
	노인운전원	매표원	간호사	테니스강사	사회복지사
	1	7	1	1	10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계약직직원규정 제3조(정의)에 의하면“계약직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직원의 채용방법으로는 그 확보가 곤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정 제4조(채용자격기준 등) ①계약직의 채용 자격기 준은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청소,경비,시설관리 인력은 계약직직원규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라 볼 수 없으며, 계약직채용자격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체

내규나 지침등은 수립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그 채용방법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지 않고 특별채용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기획감사실장은 위 지적사항과 인사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조치 지연

[위법부당내용]

도로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 제6조(도로표지의 색채), 제7조(도로표지의 설치 장소)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종류별 형태, 설치방법, 표지의 색채 및 설치장소와 화살표에 노선번호 등을 표시함에 있어 녹색으로 표시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도모하여야 하고,

또한 동법 제52조 및 도로표지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 인천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서구에서는 도로표지판 및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설치허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도돌출 6건, 색상 등 규격부적합 6건 등 총12건의 부적합 안내판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받았으며, 동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처리지침(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 자체감사처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서구(건설과)에서는 위 부적합 간판 12건에 대하여 2004년 중 2차례에 걸쳐 시정촉구 공문만 발송한 채로 종결된 것으로 제출하였고, 2005. 7월 재차 시정촉구토록 요청한 후에야 색상 등 규격에 부적합한 6건은 완료를

하였고, 차도로 돌출된 6건에 대해서는 감사일 현재 5건은 정비완료하고, 1건은 현재까지도 정비를 하지 않고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다.

[처 분 요 구]

1. 2003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수립 및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34조(행정정보 등의 보호조치)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구분 관리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4조(기본방향) 및 제7조(세부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보안업무의 심사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치단체 S/W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여부를 협의·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8조, 제29조(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2004.10)에 의하면 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운영·관리하며 유지 할 의무가 있고,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S/W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동 시

시스템이 개발구축 된 후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한 (주)아이티웰 업체의 서버에서 관리·운영됨에도 정보시스템 및 자료관리 등 업무전반에 대한 보안성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 시스템의 자료가 행정정보이면서 중요한 과세자료임을 감안할 때 자료 및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체계화하지 않은 사실과, 본 프로그램(시스템)이 청소행정과에 설치되어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나 하나, 계약 업체에만 프로그램이 설치·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에서는 매월 전달의 부과자료 만을 제출받아 자료보관만 하는 등 자료전반 및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또한, 동 시스템은 서버와 PDA 기기의 연계로 2004년부터 매월 기기(PDA) 당(2004년 4대, 2005년 7대) 60천원의 서버 이용료를 지출하였으나, 2006년에는 업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의 타 자치단체 미 확산·보급을 이유로 PDA(9대) 1대당 150천원의 서버 이용료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1. 향후 정보화시스템(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의 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과 행정자치부의 S/W 개발관련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지침에 의거 정보화부서와 협의·조정하여 시스템(프로그램)을 도입하기 바람.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성 심사와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고, 행정(과세자료 등)자료의 정보유출방지·백업·소산대책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의 운영·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1) 제2조에 의거 “패키지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 수요자에 의해 주문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협상에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패키지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구매 또는 개발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제22조(사업대가 기준) 및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의거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을 패키지소프트웨어 구입설치인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도입 추진하였으며, 지방서에 본 사업과 관련 없는 물품 및 장비도입 내역을 작성하여 설계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패키지소프트웨어제품이 아닌 프로그램 보완개발로 140일을 지연하여 사업을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준공검수와 관련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지방서상의 물품(PDA, 서버) 등에 대

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하나, 지방서를 설계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검수하여 지방서상의 사업 내용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서구 교통행정과에서는 향후 정보화시스템(프로그램 포함) 구매 및 개발·구축용역시 도입되는 시스템의 H/W 제품사양과 S/W 개발(구축)범위에 대한 세부내역을 과업요구(지시)서에 명시하기 바랍니다.
2. 또한,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과업요구서(지방서 등)를 기준으로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하고, 정보화시스템을 도입(구매 등)시 예산범위 내에서 최고의 시스템(프로그램)이 구축 될 수 있도록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S/W 중복개발 검토 등을 정보화담당부서와 협의 · 조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명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5조(개인용컴퓨터 보안관리), 제29조(단말기 보호)에 의거 개인용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 ○○○, ○○○는 개인정보자료 및 지방세 과세자료를 개인PC에 무단방치 하였고, 그 외 의회사무국 최재영 외 5명은 개인PC에 개인정보자료 등 불임자료와 같이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단말기(개인용컴퓨터) 취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개인용컴퓨터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중단시 화면 보호조치를 설정하고,
2. 부득이 자료(파일, 디렉토리) 공유시 비밀번호 부여조치를 하여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명

[제 목] 세어도 지하수개발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세어도 지하수개발공사	'04. 6. 9	'04. 8.23	56,342	50,487	(주)○○엔지니어링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호기간은 지정된 보호기간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

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3(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항에 의하면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80일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제1항에 근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120일 이내에 신기술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발주부서에서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특별한 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허공법 및 신기술이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부서에서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신기술이 보호기간내에 있는 기술이거나 기간만료 시점에 있다면 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 입찰의 형태로 낙찰금액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서구 건설과에서는 부족한 식수를 확보하여 세어도 주민의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어도 지하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 오염지표지수 유입 방지를 위한 팽창팩카그라우팅방법(건설신기술 제286호)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시방서를 첨부하여 재무과에 계약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재무과에서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팽창팩카그라우팅방법(건설신기술 제286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업체(준공시까지 협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로 자격을 제한하여 1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주)○○엔지니어링만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서(사용기간 2003.10. 2 ~ 2004. 6. 1)를 제출하므로써 유찰이 되자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장에게 적격업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의뢰를 하였습니다. 이때 건설신기술286호 지정일자는 2001. 6. 2(3년)으로 하고 신기술 사용협약서에 의한 투찰업체 사용기간은 2004. 6. 1한으로 명시하여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시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재입찰 추진을 요구하자 재무과에서는 2004. 5.19 재입찰을 추진한 결과 역시 2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주)○○엔지니어링만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서(사용기간 2004. 2.21 ~ 2004. 6.1)와 신기술개발자 ○○○은 신기술 보호기간이 2004. 6. 1로 다가오자 (주)○○엔지니어링에 건설기술보호기간 연장시 지체없이 신기술 사용협약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협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입찰결과 역시 적격업체 1개업체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재공고결과 낙찰자가 없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04. 6. 9) (주)○○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팽창팩카그라우팅방법(건설신기술 제286호)은 지정일이 2001. 6. 2이고 보호기간이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서 2004. 6. 1에 보호기간은 만료되게 되었고 또한 신기술호기간이 연장은 보호기간 만료일 120일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당해 사업 계약추진을 위한 입찰시기에는 신기술 제 286호의 보호기간 연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어도 지하수개발공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기술 제286호의 보호기간 만료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호기간 만료시점인데도 팽창팩카그라우팅방법(건설신기술 제286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업체로 부당하게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였고, 또한 당해 입찰이 유찰되고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새로운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

대자를 선정함이 타당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재공고 입찰과정에서 (주)○○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협약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출된 서류를 보더라도 보호기간 및 사용협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보호기간 연장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 입찰의 형태로 낙찰금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봉투에 봉인하지도 않은 입찰내역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담당 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신기술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신기술의 보호기간 만료시점 등 입찰제한조건 부합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찰을 추진하도록하시고
2.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검토하여 부적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 공법검토 소홀 및 수의계약방법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콜럼비아공원)	'04.12.31	'05. 3. 3	27,700	24,950	(주)○○○ 테크놀러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가좌체육공원)	'05. 9.22	'06. 3.20	29,920	27,520	상 동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호기간은 지정된

보호기간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신기술 등 공법제한 부적정

서구 민원봉사과와 재난관리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정호를 오염된 지표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수하므로서 지하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토록 하고자 콜럼비아 공원과 가좌체육공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주부서에서는 특별시방서에 특허 제03334451호, 환경신기술 제47호, 건설신기술 제286호로 시공하도록 하여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공법으로 제한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면 공정별로 적용할 신기술공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 공정에 특허 제03334451호, 환경신기술 제47호, 건설신기술 제286호의 공법이 필요한 사유나 대체기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없이 3가지 신기술 공법으로 제한하였고

또한 특허 제03334451호의 발명의 명칭은 『지하수심정용그라우팅파이프장치및그라우팅방법』으로서 건설신기술 제286호 『지하수 관정 오염 유입방지를 위한 팽창 팩카그라우팅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공법이고, 설계 또한 특허 제03334451호 공법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신기술 제286호는 의미가 없는 공법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신기술 역시 특허 제03334451호 및 제

0299417호 공법을 내포하고 있어 중복되는 공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당해 공사에 필요한 공정별 공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설계 및 시방서를 작성 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하여 자격을 중복으로 제한하여 계약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 ② 수의계약시 예가 미작성 등 수의시담 부적정

또한 당해사업은 입찰대상 사업으로서 국제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 입찰의 형태로 낙찰금액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단순하게 견적서만을 기초로 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공사의 공법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특허나 신기술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정별 공법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2. 또한 입찰대상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수의시담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도급공사 하도대가지급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선금액	업체명
초지대교~경인운하간도로포장공사(2차)	'04. 6.11	'04. 8.27	236,150	239,159	-	(주)○○○종합건설
서곶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조성공사	'04. 8. 9	'04.10.22	959,431	908,977	337,280	(주)○○건설
철마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05. 4. 7	'05. 6. 5	191,840	191,840	50,944	○○○조경

### 『하도급 계약 내역』

사업명	하도계약내용		
	하도분야	하도금액	대가지급
초지대교~경인운하간도로포장공사(2차)	토공 1건	123,200	직접지급 합의
서곶근린공원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	조경시설물1건	695,200	지급보증 및 직불합의서 없음
철마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조경시설물1건	136,994	상 동

###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와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등) 제3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 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 분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대교~경인운하간도로포장공사(2차)』는 하도급 대가에 대하여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직불합의가 없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서곶근린공원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의 1건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대가를 직접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금(준공금)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규정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조치없이 원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하도급공사의 선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자금이 관계규정에 따라 하도업체에 정확히 지급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앞으로 선

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시부터 철저히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신현북초등학교외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05. 8. 2	'05. 9. 1	30,866	27,467	○○건설(주)
석남2동 지구교통개선 사업(미끄럼방지포장)	'05.12.29	진행중	44,710	40,590	○○건설(주)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2항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사의 업종 등을 판단하여 적격자에게 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 지방내역 등을 검토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도급계약

『신현북초등학교외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의 1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이므로 당연히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토없이 종합건설자(○○건설, 토목공사업)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 ② 신기술을 근거로한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건설과에서 발주한 『신현북초등학교외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제344호 공법으로 추진하겠다는 특별시방서를 첨부하여 계약의뢰를 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석남2동 지구교통개선사업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는 시방서에 신기술 공법에 의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첨부물에 건설교통부 신기술지정증서 제344호(신율이 높은 에폭시수지와 변성우레아용액(요변제) 및 규사를 상온 혼합한 미끄럼방지용 모르타의 제조 및 상온 도포 공법)를 첨부하여 계약의뢰하였으며, 이에 재무과에서는 당해공사 2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신기술 344호를 근거로하여 문창건설(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신기술 344호의 개발자는 ○○○이고 ○○건설(주)는 이 ○○○와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기술공법으로 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고려하되 신기술에 의한 공법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대체공법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신기술 사용권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게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추진하던가 아니면 신기술 개발자와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야 타당함에도 건설교통부 신기술

344호 개발자 ○○○와 신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한 ○○건설(주)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석남2동 지구교통개선사업 미끄럼방지포장 공사는 시방서에 신기술 공법에 의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첨부물에 건설교통부 신기술지정증서 제344호를 첨부하였을 뿐인데도 공법 등 시방서 내용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결과적으로 『신현북초등학교외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외 1건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초 본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종합건설업체인 문창건설(토목공사업)과 건설교통부 신기술 344호 신기술 사용 협약을 근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 [위법부당내용]

1.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 공사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2.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검토하여 부적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단체수의계약체결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업체명
소하천 안내판 설치공사	'05. 3. 4	'05. 4. 6	58,850	52,370	○○○○협동 조합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는 방법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물품에 한하여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회계 13300-74(2003.1.11)호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 및 분리발주 이행 이첩 통보』 공문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자재중 단체수의계약 물품 등이 포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각 발주기관에 국무총리지시(국행0101021-129호, 1996. 7. 5 국행 0101021-206호, 1996.10.24)로 시달한 바 있으니 전 사업소 및 군·구에서는 동

사항이 적극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내용에 보면 ○○○○○ 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는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에 한하며, 건물이나 행사장의 벽외부에 안내를 위하여 설치 또는 부착된 간판)에 한하여 단체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구 건설과에서 서구 관내에 소재한 소하천(1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경장, 매립 등)를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한 『소하천안내판설치공사』는 안내표지판 제작, 안내판 설치, 지주설치, 기초공사 등으로 설계하여 공사로 발주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공사는 건물이나 행사장의 벽외부에 안내를 위하여 설치 또는 부착되는 안내판으로 볼 수 없는 공사이므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발주사업의 성격·설계서·계약방법에 대한 어떠한 검토 없이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하므로써 타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 [처 분 요 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공사를 물품의 제조·구매로 확대해석하여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현무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현 황]

- 위 치 : 서구 마전동 774번지 일원
- 면 적 : 22,497㎡(국궁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 사 업 비 : 2,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7
- 예산확보현황 : 130백만원(구비)
  - 조성계획 용역비 : 60,000천원(2004년도 본예산)
  - 실시설계용역비 : 70,000천원(2004년도 2회추경) - 조성계획용역비예산 증액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제2항 2호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시·군·자치구의 사업비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규칙 제5조(투자심사결과와 통보 등)제3항에 의하면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비는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이체)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 도시개발과에서는 검단지역의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무체육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현무체육공원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현무체육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60,000천원을 반영하고 2004. 3. 15 조성계획용역을 착공하여 2004. 9.23 당해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04. 9.10 현무체육공원 조성 설계용역비 예산 70,000천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였고 이 예산은 조성계획 용역비가 130,000천원으로 증가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 2004.11. 9 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당해 예산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2005.10.27 실시계획용역을 발주(준공예정일 2006.5.29)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2005. 8. 5에 2005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여 2005.10.23 조건부(현공원내 공동장활용방안 등 사업계획 검토 및 재원확보후 정상추진)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 ① 투·용자심사 미이행 상태에서 사업추진

투·용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전에 투·용자심사 승인을 받거나 조건부 승인은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설계 예산을 조성계획용역 예산이 증액되는 형태로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투·용자심사는 2005년도 하반기에야 승인요청하였으며, 또한 현공원내 궁도장활용방안 등 사업계획 검토 및 재원확보 후 정상추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검토나 조치 없이 바로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현 공원내 궁도장 활용방안 등 사업계획 검토나 확보하고자 했던 국비 10억원에 대하여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추경예산편성 요구가 있었다면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증액사유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투·용자심사대상 사업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투·용자심사 대상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 ② 편법적인 예산운영

편성된 예산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을 달리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조치하거나 예산전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과목도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과목상 시설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현무공원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당초 연구용역비에 편성되어있던 현무체육공원조성 계획 용역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또한 명시이월은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무체육공원조성계획 용역은 2004년 9월 준공되었으므로 당해사업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발생한 잔액은 추경예산시 삭감하

거나 결산시 불용처리 대상으로서 예산의 이월이 필요없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아울러 실시설계 용역은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과목도 시설비 목에 편성해야 하는 만큼 신규사업 예산편성 절차와 같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액을 명시하여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지 아니하고 공원조성계획 용역 준공이 임박한 2004.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반영되어 있던 공원조성계획 용역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를 200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받주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한 명시이월 승인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한 이월사유를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이미 준공되었음에도 『용역시행에 따른 이월』이라고 기재하여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시에 『현무체육공원조성 설계용역』 신규 예산으로 70,000천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하였다 하나 이는 사업의 명칭이 실시설계비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게 『현무체육공원조성 설계용역』으로 요구하였고 또한 당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받아 정리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는 바 당해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기본용역 증액으로 요구되었는지를 판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무공원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했다면 차기 추경에도 과목정정으로 정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당해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의 총괄 부서로서 예산의 명칭 및 금액 등이 불명확했다면 당해 예산의 목적, 추진상황 및 예산의 증액 또는 신규반영의 타당성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명시이월 또한 당해사업이 이미 준공되었고 투융자심사를 승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명시이월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등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책임

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전반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조건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예산의 편성, 집행, 이월 등에서도 편법과 부정확한 자료작성 등으로 위법 부당하게 제반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는 등 열악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투·융자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사승인을 받은 후 예산반영 등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조건부 승인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의회경상예산 편성 부적정

[현 황]

※ 자료 별첨

[위법부당내용]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경비에 의거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인천광역시(예산담당관실)에서 군·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을 통보하고 있으며, 서구의 경우 2004년도에는 217백만원, 2005년도는 228백만원, 2006년도는 24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실제 서구 시책추진비 예산반영 결과를 보면 기준액 241백만원보다 2백만원이 초과한 24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관련경비중 해외여비는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경비로서 자치구의원의 경우 1인당 1,300천원 이내, 의장·부의장의 경우 1,800천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자매결연 단체와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에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서구 의회 해외여비 편성기준액은 24,960천원(30%증액

감안)으로 이 범위내에서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와 2006년도 예산편성액은 이보다 각각 1,440천원이 많은 26,400천원으로 과다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서 2005년도의 경우 기준액이 74,200천원인데도 이보다 10,000천원이 초과한 84,200천원을 과다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의회경상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편성지침상 기준액 초과하여 과다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기준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46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2004 ~2005)

[현 황]

(단위: 천원)

사용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현금집행		부당집행액			비고
				금 액	%	계	과목해소	사적경비	
계	계	401,000	399,194	70,600		2,940	2,480	460	
	기관운영	186,000	184,752	38,930	20.9	460		460	
	시책추진	215,000	214,442	31,670	14.7	2,480	2,480		
○○○	계	256,000	255,564	46,230		120	120		
	기관운영	106,000	105,715	20,990	19.8	-	-	-	
	시책추진	150,000	149,849	25,240	25.2	120	120		
○○○	계	117,000	115,846	18,780		540	80	460	
	기관운영	74,000	73,065	17,000	22.9	460		460	경조사 비9건
	시책추진	43,000	42,781	1,780	4.1	80	80	-	
○○○	계	28,000	27,784	5,590		2,280	2,280		
	기관운영	6,000	5,972	940	15.6				
	시책추진	22,000	21,812	4,650	21.1	2,280	2,280		

[위법부당내용]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

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및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시책사업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거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되 무분별한 현금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현금 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사적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조사비의 지출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4~2005년도 총무국소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조사비 2,480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또한 개인적인 경조사비 460천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현금지급한도, 사적집행금지,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2. 사적인 경조사비로 집행된 460,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9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2004 ~2005)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

년도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현금집행		부당집행액			비고
				금 액	%	계	과목해소	사적경비	
계	계	22,000	21,787	1,180	5.3	550	400	150	
	기관운영	6,000	5,999	630	10.5	-	-	-	
	시책추진	16,000	15,788	550	3.4	550	400	150	
2004	계	11,000	10,970	270	2.4	150	150	-	
	기관운영	3,000	3,000	60	2	-	-	-	
	시책추진	8,000	7,970	210	2.6	150	150	-	
2005	계	11,000	10,817	910	8.2	400	250	150	
	기관운영	3,000	2,999	570	19	-	-	-	
	시책추진	8,000	7,818	340	4.2	400	250	150	60천원 기반납

[위법부당내용]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

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및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시책사업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거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되 무분별한 현금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현금 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사적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조사비의 지출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4~2005년도 ○○○○○○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조사비 550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또한 개인적인 경조사비 150천 원(60천 원 기반납)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현금지급한도, 사적집행금지,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2. 사적인 경조사비로 집행된 90,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60,00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국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2004 ~2005)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국장)

(단위 : 천 원)

년도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현금집행		부당집행액			비고
				금 액	%	계	과목해소	사적경비	
계	계	22,000	18,440	2,330	10.5	570	510	60	
	기관운영	6,000	5,721	2,030	33.8	270	210	60	
	시책추진	16,000	12,719	300	1.9	300	300		
2004	계	8,000	7,710	920	11.5	30	30		
	기관운영	3,000	2,942	890	29.6	-	-		
	시책추진	5,000	4,768	30	0.6	30	30		
2005	계	11,000	10,730	1,410	12.8	540	540		
	기관운영	3,000	2,779	1,140	38	270	210	60	
	시책추진	8,000	7,951	270	3.4	270	270		

[위법부당내용]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및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시책사업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거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집행

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되 무분별한 현금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현금 집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사적 경조사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조사비의 지출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04~2005년도 ○○○○국소관(국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조사비 300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고, 개인적인 경조사비 60천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현금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액의 30% 범위내에서 현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5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를 초과한 38% 1,140천 원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바, 현금지급한도, 사적집행금지, 목적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2. 사적인 경조사비로 집행된 60,00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예결특위 포함)

(단위 : 천원)

년도	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간담회	개인물품 구입	기타		
계	총계	271,200	252,371	134,781 (794회)	41,878 (12건)	75,771	18,829	
	의정운영	158,400	144,409	42,746 (135회)	41,878 (12건)	59,784	13,991	
	기관운영	112,800	107,962	92,035 (659회)	-	15,927	4,838	
2004	계	130,600	126,577	68,749 (339회)	23,550 (7건)	34,278	4,023	
	의정운영	74,200	74,197	23,473 (70회)	23,550 (7건)	27,174	3	예결특위 제외시 1,690천원 과다집행
	기관운영	56,400	52,380	45,276 (269회)	-	7,104	4,020	
2005	계	140,600	125,794	66,032 (455회)	18,328 (5건)	41,433	14,806	
	의정운영	84,200	70,212	19,273 (65회)	18,328 (5건)	32,610	13,988	
	기관운영	56,400	55,582	46,759 (390회)	-	8,823	818	

[위법부당내용]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집행기준에 의하면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집행이 가능하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므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공통경비의 성격상 회의비, 의장단실운영비, 의원 연구활동 지원비, 위문격려비, 외빈접대비,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비, 연수비, 기타 공적경비 등과 같이 내역별로 배분한 연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원활한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포괄적 성격의 제경비로 이 또한 의장단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공적경비로만 집행이 가능하고 사적사용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〇〇의 04-05년도 업무추진비(〇〇공통및기관운영) 집행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용품(의류)을 구입하여 개별지급
  - 의회 운영의 공통경비 성격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활동이 아닌 사적 경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공통경비 성격상 예산집행의 균형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는 주요 항목(내역)별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균형 및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공적인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고가의 개인용 의류 및 가방 등을 체육대회, 단합대회 및 의전용 등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11회에 걸쳐 304개를 52,227천원에 구입하여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간부 및 출입기자 등에게 배분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후 문제가 발생하자 그중 일부인 11,068천원을 '06.2.20 및 '06.2.23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업무추진비(공통운영및기관운영)의 간담회비 편중 집행 등

- 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의장단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회의비, 연구활동비, 연수비, 의장단실운영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를 위한 간담회비, 위문격려비 등으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기간중(04-05년도)업무추진비 총액예산 271,200천원(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보다 10,000천원 과다 편성 : 2005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중 집행액 252,371천원(기준경비 대비 93.2%집행)을 집행하였으나 그중 간담회 비용이 794회(공휴일을 포함하여도 매일 1회 이상)에 걸쳐 131,781천원으로 총 집행액의 53.4%(부당 구매한 개인물품 제외시 총집행액의 64%)로 간담회 비용 위주로 편중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2004년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별도 계상된 예결특위 예산 7,000천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의 예산 67,200천원 보다 1,690천원을 초과하여 68,890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법원의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 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2004.12.14 당시(제4대 제2기)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2004.12.14 새로운 의장(○○○) 등이 선출 되었으나 2005.12.17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4아312호에 의거 의장 불신임 결정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고, 2005.10.25 당시 총무위원장(○○○)에 대한 제명 의결후 2005.10.25 새로운 총무위원장 (○○○)을 선출하였으나 2005.12.26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5아316호에 의거 총무위원장 제명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결정이 있는 날부터 의장 및 총무위원장에 대한 각각의 불신임 및 제명 의결은 효력이 정지되어 당초 의장(○○○) 및 총무위원장(○○○)이 각각 해당 기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의장업무추진비의 경우 31회에 걸쳐 15,620천원을, 총무위원장의 경우 5회에 걸쳐 490천원을 권한이 없는 의원이 각각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4. 비교시찰 등의 경비 수령 후 식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지출

- 기간중(04-05년도) 10회(비교시찰 6회, 의원연수 4회)에 걸쳐 타시도 비교시찰 및 의원연수를(총109명 : 의원56명, 직원53명) 실시함에 있어 소요경비 전액(총38,537천원 : 위탁교육비, 여비 등)을 기 지급 하였으므로 비교시찰 및 연

수기간 중에 소요 되는 식비 등은 해당 경비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총15건 2,897천원 상당의 식비 등을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그 중에는 유흥을 위한 노래방 경비 30천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사무국 직원 전보시 전별품(금반지)을 업무추진비에서 부당 지출

- 기간중(04-05년도) 의회사무국 직원 15명의 전보 발령시 전별품으로 1인당 63천원 내지 144천원 상당의 금반지 1-2돈을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구입 지급하였으나 이는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적 경비로 볼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행동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6. 업무추진비를 공적 경비가 아닌 유흥용으로 집행 후 반납

-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인 유흥용으로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회에 걸쳐 2,030천원을 사적인 유흥용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후 10-50여일 후에 반납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7.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자료 미구비

-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업무인 경우 위로금, 격려금 등과 같은 소액 경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일시, 목적, 대상자 및 수령증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나 기간중(04-05년도) 집행한 위로금, 격려금에 대하여 수령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 분 요 구]

1.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특히 의회 운영의 공통경비 성격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정활동이 아닌 사적 경비나 목적과 전혀 관계가 없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바,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 중 책임소재가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으로 지정하고 있고 분임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계약서, 녹청자도요지 및 검단복지회관 위탁계약서 등에 의하면 수탁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전액은 익일오전까지 서구청에 입금 조치하여야 하고 매분기말 다음 월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구청 문화공보실에서는 검단복지회관 등 5개의 문화(청소년)시설을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문화회관을 제외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수강료 등 수입을 공단측 담당자가 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시 금액에 대한 내역확인을 하지 않고 전산에 의한 OCR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토록하고 있고

- 문화공보실장은 분임징수관으로서 5개 시설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결의서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수탁자의 징수결의로 갈음처리하고 있음.

- 위탁계약서 등에 명시된 대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연 1회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04년 감사팀에서 자체 정기감사 이후 아무런 감사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은 '06. 1. 1부터 위탁사무를 추진하면서 제1기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06. 3. 6일부터 수강생을 접수하면서 다음날 수강료를 구청에 입금 조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총7회에 걸쳐 10,220,000원을 입금 조치하였다. 또한 ○○○○○○은 '06. 3. 17 자체 징수결의보고하면서 총 1,050,000원을 수납하였으므로 1,050,000원을 징수결의하고 구청에 입금 조치하였어야 하나 260,000원이 누락된 상태에서 790,000원으로 징수결의하고 현금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 그 사실에 대한 내역을 확인 하던 중 260,000원을 현금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고 이는 매일매일 입금조치를 하지 않고 당일 정산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수강료 등 업무 추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문화공보실에서는 수강기간이 정해져서 매일 수납이 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처 분 요 구]

1. 위탁기관으로부터 수강료 등 수입금 세입 조치 시 내역확인(증빙첨부)을 반드시 하고, 관련법에 의거 세입징수결의를 하시기 바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정산검사 등 계약서 및 조례 등에 명시된 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접수·수납 관련 장부 및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노래연습장 등 변경등록 관련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는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영업자,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있고,

같은법 제33조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법제39조제1항의 각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서구청 문화공보실에서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업무 중 등록업무에 대한 대표자 변경업무를 처리하면서 양도인의 행정처분 진행상황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여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소관을 분명히 하여야 하므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관련법규 위반 단속결과에 대하여 단속일의 익일에 통보하는 업종, 업소명, 업주, 소재지, 적발일, 통보일, 위반내용, 통보기관 등 유선통보 사항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였어야 하나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누락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는 등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관할 경찰서의 단속결과에 대한 유선통보 사항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여 대표자 변경시 양수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6,494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 8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피대부자는 국가(관리청)의 승인없이 대부목적은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의 승인없이 임의로 대부목적은 변경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계약의 해약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구 재무과에서는 서구 ○○동 ○○○번지 ○○축산사료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 토지면적 총 1,194.4㎡중 903.4㎡은 공장으로 288㎡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1998.12.31. 체결하였으나, 2006.3.28. 서구 재무과 국유재산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 체결한 토지면적 288㎡중 54.7㎡을 임의적으로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유재산 담당자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된 부분은 사실을 인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당초 계약서대로 계약함으로써 6,494천원 상당의 대부료 과오납금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의 계약내용에 위배되어 임의 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 54.7m<sup>2</sup>에 대한 대부료 과오납금을 부과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고,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구 건설과에서는 2004년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의 대조 확인과 현지실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채 공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현지실사를 통한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2005년도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구입 계약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121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하며,

물품을 구입·제조할 때에는 물품에 대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초로 견적서 등에 의한 시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제조를 의뢰 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2005년도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 (위생도마, 주방용칼)을 2005.9.20. 서울 강남 ○○동 ○○○외 1인과 계약함에 있어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이면 기재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이면 기재사항인 계약에 관한 구입 물품명세서, 승낙사항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물품

을 구입·제조함에 있어서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2005.9월(날짜 부정확)에 지역경제과에 칼과 도마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지 문의하여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 없이 단순히 인터넷으로 시장 조사한 후 서울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이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노력(지역경제과-6107, 2005.3.4)을 장려하여야 하는 해당 부서임에도 지역업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울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에 소홀히 하였으며,

2005.10.11. 위생도마 구입비 13,261천원을 지급함에 있어 지출증빙서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에 한하여야 함에도 FAX로 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지원되지 못한 도마 8세트 (774천원), 주방용칼 7세트 (731천원) 총 1,505천원 상당의 물품을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2005.12.20. 특색음식거리 변영희 회원에게 내부결재 등 아무런 방침 없이 임의적으로 교부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공무원에게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005년도 제 15기 노인대학운영계획에 따른 회시 (사회복지과-5432, 2005.3.3)에 따르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한다는 지침을 ○○○○○○지회장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서구 사회복지과에서는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검토함에 있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보조금 정산서류 영수증 처리를 간이세금계산서(36건, 7,300천원)로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서 검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하여 정산서류를 검토하시고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구문화원육성기금 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여야 함에도

서구 문화공보실에서는 2002년부터 서구문화원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함에 있어 각종 문화행사 등 사업에 우선 지원하지 않고 서구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기금을 운용하는 등 기금조성 목적에 위배되어 서구문화원육성기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차보전금 지출 행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지급명령의 종류는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이 있으며,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발하고, 송금(계좌)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할 때,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할 때 발하며,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에도

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이차보전금을 지출함에 있어 기금출납원은 지급대상인 채주(용자은행)를 수령자로 하는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지 않고 일반 은행예금 청구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지급대상인 채주에게 자금을 지출시 지방재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지급명령 방법에 의거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민원처리 소홀  
및 분할납부 허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4년 5월부터 2005년12월까지 과징금분할납부를 신청한 민원 17건의 민원서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하였음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일시에 징수해야 함에도

2004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처리된 9건의 과징금분할납부신청이 상당기일 경과한 후에 접수되어 부적합하였으나 신청서를 접수·처리하였고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과징금분할납부 허용 여부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분할납부 허용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3건에 대하여 일괄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앞으로, 반드시 과징금분할납부신청서를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여 민원서류로 접수·처리하고, 관련자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과징금분할납부신청 민원서에 대해 접수기간내 신청여부와 분할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4,470천원, 지급 540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가.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부당지급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분기 첫달(1,4,7,10월) 20일에 지급되는 노인  
교통

수당이 보건복지부 지침(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질의응답 사례  
집, 2004. 5)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지급정지) 기준은 ‘사망일’ 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정2동  
○○○외 11명에 대해 수급권 상실기준을 사망일로 하지 않고 사망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942천원을 부당  
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나. 사망 또는 사망신고이후 노인교통수당 부당지급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면 지급을 중지해야 함에도

2004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정1동 ○○○외 1명에 대해 사망일 또는 사망신고일 이후에 7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 소홀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은 수급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지급을 중지해야 함에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10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신현원창동 ○○○외 12명에 대해 수급권 상실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540천원을 미지급한 사실 이 있음.

#### 라.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환수조치 소홀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면 지급을 중지하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노인교통수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4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연희동 ○○○ 외 94명은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3,456천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서면으로 환수요청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환수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미지급된 노인교통수당 54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4,470천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민원사무편람 정비 소홀

[위법부당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민원실 등에 민원사무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계법규가 개정·신설·폐지된 경우에는 민원사무편람 내용이 변경되어야 함에도

2004년과 2005년도는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미확보를 사유로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도에는 제작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여 3개년 동안 민원사무편람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사무편람 정비 사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서구민원사무편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개정된 민원사무편람이 제작되어 민원실 등에 비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개선 등 시정을 명하고,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市 사회복지봉사과에서 2005.9.2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조사기간 : 2005.6.29~8.22) 결과를 통보하고, 2005.10.20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조하는 공문을 재 시달하여 동사무소, 문화회관 등 구 관할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기관 및 보수가 필요한 공공청사에 대하여 편의시설 정비예산을 확보토록 강조한 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 미설치 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및 부서별 협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점자블록을 미설치한 가정1동파출소 등 타기관 관할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기관에 대해 편의시설 정비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기 바라며, 타기관 관할 미설치기관에 대하여는 조기에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지급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해산급여는 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하여 출산 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제3항에 따라 해산급여의 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에도

2004년 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명에게 해산급여를 지급하면서 해산급여신청을 출생신고로 갈음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해산급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외 3명에 대해 해산급여 지급을 13일에서 35일까지 지연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규정 연찬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육시설 지도점검 사후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거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 화재예방, 안전·위생관리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내 148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 큰사랑어린이집 등 50개 시설에 대하여 살균소독기 미비치, 회계장부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도 당해 보육시설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통보 받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품 관리 부적정 및 공개 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규정된 서식에 의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월간 공개해야 하나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2005. 2.15부터 2006. 2.21 기간중 개인 및 단체로부터 후원금 49,807천원을 접수하고, 2005.2월부터 12월까지 델리명과 등으로부터 빵,쌀 등 16,023천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제공받았음에도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 및 사용결과를 구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후원금품을 제공한 후원자에게 사용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내역과 후원금전용계좌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관리, 공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서구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가. 서구구정조정위원회 심사 절차 없이 수탁기관 선정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노인복지회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2004. 9.15~10.15 한달간 일간신문, 구보, 구홈페이지 등에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회복지법인 ○○○○등 6개 법인이 신청을 하여 2004.12. 9 서구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단을 결정하였으나 2004.12.17○○재단에서 서구노인복지회관 수탁포기서를 제함에 따라

서구시설관리공단과 2004.12.27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사실이 있음

### 나. 先 위탁협약 後 인력채용

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00.12.22 서구청과 서구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1. 1.1 부터 서구노인복지회관의 시설관리 및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서구노인복지회관내에서 ○○복지재단의 부설인 서구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재가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등을 운영하여 서구노인복지회관이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화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일원화 할 방침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었음

따라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협약체결 당시에는 서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던 재가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 2005. 1.10 직원 채용공고를 통해 시설장,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등 6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음

#### 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능력 부재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체결을 검토하면서 재가사업 경험이 전무한 공단에서 정상 운영하기까지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인력 채용 기준이 최소 20일 이상 소요되며, 원활한 인수인계가 불투명하고 신규인력의 적응기간도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볼 때 약 1개월 이상의 재가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기 위탁법인 선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검토의견을 제출한 2004.12.27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위탁사업 중 경로식당을 제외한 사업은 법적요건과 인적자원이 확보되는 시기에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하여 서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하던 재가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은 수탁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2005. 2월부터 위탁사업 전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라. 서구재가복지센터 보조금 지원 부당**

서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협약 체결 다음날인 2004.12.28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재가노인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 재가복지사업(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에 대한 인수인계를 2004.12.31까지 마칠 것을 요구하였고,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2005. 1월부터 동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지급했어야 함에도

서구시설관리공단이 2005. 1.1부터 재가복지사업,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서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동 사업을 운영하여 2005년도1월분 보조금 17,203천원을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지 않고 서구재가노인복지센터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

**마.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 연장 협약체결 부당**

2004.1.27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면서 동 협약서 제2조에 위탁기간은 2005.1.1부터 2005. 12.31 까지 명시하였고 단서조항으로 위탁기간내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로 제한하였으며, 각종 보고서에 서구시설관리공단과의 위탁기간은 한시적(임시적)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동안 당초 공개모집의 취지에 맞게 전문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 등의 행정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5. 12. 1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연장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바.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절차 미이행**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함에도

2004.12.27 과 2005.12.1 2회에 걸쳐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서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관리  
협약 및 위탁연장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증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당초 공개모집의 취지를 살려 서구노인복지회관이 전문화된 사회복지법인에서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에 위탁법인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정 557,950천원

[제 목] 발전소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제3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 (구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위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각종 공기업법에 의한 공법인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광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토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

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 규정이라는 점 등 토지분 재산세 (구 종합토지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문 그대로 발전시설 또는 송전·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되고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인천 서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인천○○발전의 경우, 동 발전소 부지내에 소재한 테니스장 2,251.4㎡, 나대지 7,300.0㎡, 소운동장 4,824.0㎡는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인천 서구 ○○동 ○○○번지에 소재한 ○○○○발전의 경우, 동 발전소 부지내에 소재한 운동장 36,662.0㎡는 그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발전소별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이를 분리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함에 따라 2001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 관련 토지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464,958천원, 지방교육세 92,992천원, 합계 557,950천원이 부족 과세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1. 부과 누락된 재산세 등 557,950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38,238천원

[제 목] 비영리사업자 및 아파트형 공장 등 지방세 감면분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및 제186조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 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 ○○○외 6인이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 영유아보육시설 등 비과세 대상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용 등으로 겸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취득세등 66,783천원을 과세하여야 하고, 인천 서구 ○○동 ○○○외 6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취득세등 69,145천원, 재산세등 1,051천원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세원관리 소홀로 합계 136,979천원의 지방세를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 ○○○외 3인이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재산세등 합계 1,259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138,238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50,344천원

[제 목]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인천 서구 ○○동 ○○○외 4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16,696천원을 과세 누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인천 서구 ○○동 ○○○외 18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등 33,648천원을 과세 누락하였음.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50,344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85,873천원

[제 목]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등에 대하여는 당해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제 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법상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종합건설의 10개 법인이 2001.6.22부터 2003.12.23까지 주택 건설용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부속상가 등 근린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등 기하거나,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 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이에 대한 세원관리 소홀로 관련 등록세 156,971천원, 지방교육세 28,902, 합계 185,873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1. 중과세 누락된 등록세 등 185,873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3,767천원

[제 목]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및 제250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인천 서구 ○○동 ○○○외 10건의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2,627천원을 과세 누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는 인천 서구 ○○동 ○○○외 2건의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1,140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사업소세 합계 3,767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1,081천원

[제 목] 주민세 특별징수분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조경(주)의 22건의 주민세 특별징수분 7,493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는 (주)○○의 28건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 3,588천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주민세 등 합계 11,081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관련 부서장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세원 관리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5,891천원

[제 목]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등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96조의8제2항에 의하면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자동차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된 “인천○○누○○○○” 차량등 33건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대상 공동명의자간 세대분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고 ○○○○”차량의 경우 감면대상 차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에도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하여 자동차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9,381천원을 과

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의 명의로 공동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된 인천○○며○○○○ 등 24건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대상 공동명의자간 세대 분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감면대상 차량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분가 및 매각으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에도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련 자동차 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6,510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자동차세 등 15,891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71,816천원

[제 목] ○○항공 사원아파트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과세누락

[위법부당내용]

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2005.12.27 조례 제37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되 취득세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2003.12.31자로 법률 7030호로 폐지되었음.

구 「임대주택법」(2005.7.13 법률제75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3조제1항에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의 경우, 2004.4.16. 인천광역시 서구 ○○동 ○○항공 (사원)아파트 내 주민체육

장 1,843.15㎡(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근로자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서 입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이라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도 및 2005년도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음.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및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부대복리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120호. 1998.3.25, 구내무부 유권해석 1996.5.28. 세정13407-561, 1995.10.23. 세정13407-1046)이므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임.

“쟁점 부동산”이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항공 사원 임대아파트는 총 687세대, 71,578.26㎡로서 1998.7.3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사원 임대아파트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속 직원들에게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고, 2004.4.16. 신축한 “쟁점 부동산”의 경우 임대주택의 각 호수별 건축물대장상 공용부분에 주민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항공측에서 제시한 체육관 출입자 관리대장상에도 위 임대아파트내 입주자들이 2004.12.28부터 2006.3.26까지 출입한 기록은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주된 시설인 지상1층의 체육관은 탁구장으로서 주식회사 ○○항공 소속 탁구단의 선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지상1층

의 사무실 또한 ○○항공 소속 탁구단의 선수 전용이며, 지하1층의 식당 및 주방 또한 탁구단 선수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1층의 샤워실 및 라커룸, 지상2층의 회의실 및 락커룸 등은 탁구단 선수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임대아파트 입주자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지하1층의 탁구대 2대가 놓여진 일부 시설에 불과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주된 용도는 대한항공 소속 탁구단의 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이라 할 것임.

또한 주식회사 ○○항공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건설중인 자산명세서」 상에도 “쟁점 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사항을 “검단 아파트내 탁구단 연습장” 명목으로 표시하여 그에 따른 자산증가사항을 대차대조표상 「건설중인 자산」 계정에 포함하여 결산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 부동산”의 신축 당시의 주된 용도는 사원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주식회사 대한항공 탁구단의 전용 체육시설(훈련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실외체육시설”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임대용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위한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주식회사 ○○항공 탁구단의 전용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시세감면조례 및 구세감면조례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 부동산”취득 후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감면부

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쟁점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관련 취득세등 61,173천원, 건물분 재산세등 6,539천원, 토지분 재산세등 4,104천원, 합계 71,816천원을 부당하게 감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취득세 등 71,816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관련부서장 등 지도감독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7,080천원

[제 목] ○○○○공사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구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은) 제186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농  
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에 공여되는 구거”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  
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  
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  
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구 「농어촌정비법」 (2005.12.29 법률 77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은) 제5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농업기반정비사업시  
행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계  
획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지역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구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도록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86조 및 제26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에 공여되는 구거”에 해당하거나“ 「농지법」 상 취득하는 농지” 또는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및 집수암거, 용·배수로, 하구둑 및 방조제,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천 ○○동 외 9필지 3,118㎡(이하 “당해 토지”라 함)의 경우, “당해 토지”의 공부(토지대장)상 지목은 잡종지 또는 대지 등으로서, 현황상으로도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이 아닌 대지 또는 잡종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당해 토지”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설사“당해 토지”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세의 현황과세 원칙에 입각하여“당해 토지”토지의 현황이 농업기반시설용 토지가 아닌 잡종지 또는 대지이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토지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등 17,080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부과누락된 재산세 등 17,080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2,662천원

[제 목] 위법건축물 과세누락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누락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5조 제1항에서 “시·군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 ○○파레트외 39건의 경우, 서구청 검단출장소 건축팀에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신증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라 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지방세 과세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 소홀로 인하여 관련 재산세 4,987천원, 도시계획세 1,880천원, 공동시설세 1,927천원, 지방교육세 997천원, 합계 9,791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 ○○면 ○○리 (주)○○엔지니어링의 경우, 2000.12.26. 인

천광역시 서구 ○○동 토지 2,782㎡를 취득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9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 관련 소유권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관련 토지분 재산세(구 종합토지세)등 합계 2,871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관련 재산세 등 12,662천원을 추징 조치하고,
2. 관련부서장 등 지도감독자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관리 및 과세대장 정비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검암.경서동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검암.경서동 신축이전에 관한사항

[위법부당내용]

사 업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자
집기류(3층)제작 구입	03.7.24	03.9.22	11,960	○○○○
사무실(1층)제작 집기류 구입	03.7.11	03.9.20	18,056	○○○○
민원대 설치공사	03.7.11	03.9.20	9,960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공사의 수의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 2200.04-139, 2000.7.30)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서구 검암경서동사무소에서는 신축청사에 대하여 1층 사무실과 3층 대회의실 집기류 구입 관련하여 당해사업은 이미 계획에 의거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할 필요가 없고 또한 공사성격이 달라서 사업

별로 구분하여 설계 및 발주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당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구입발주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의뢰 하므로써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결과적으로 입찰 대상인 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하므로써 타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 검암경서동 문서제독 사업명 변경(41344-676(03.7.10)) 공문에 의하면 검암 경서동 신축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1층 집기류 물품구입에 필요한 사업명을 변경하여 물품을 구입한다고 자체 내부결재를 득하였으나 이는 기획감사실 승인사항으로 인테도 임의로 예산과목 『자산및물품취득비』 모빌랙(3연7단) 예산액 6,790,000원을 직원이동서랍, 보조책상, 직원의자, 서류함, 원탁의자, 열쇠보관함, 월중행사표로 구입예산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출하는등 업무처리 부적정 하였다

#### [처 분 요 구]

검암.경서동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한 회계담당과 동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나 위 건이 감사범위대상기간을 도래한 건으로 금번에 한하여 엄중 주의촉구 하니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동 시설 설치 후 3년 및 5년이 되는 해에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 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시설은 매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2003년~2005년 사이에 총 159개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중 4개의 시설[(주)○○상사 인천지점, ○○주유소, ○○주유소 및 ○○주유소]이 토양오염도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 검사 주기를 이행치 아니하였음에도 독려나 지도·점검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이행토록 주기적으로 지도·독려하시기 바라며, 법정 토양오염도 주기를 이행치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형식적 운영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및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동 규정에 정하여진 바대로 기업체의 부담경감 및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우리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함에 있어서 통합지도·점검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선요구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시간관계상 2004년 지도·점검 중 상반기 서류만 확인) 2004.3.11 대기 및 폐기물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환경7급 000 및 민간인 000 등 2인이 참여하여 ○○시멘트(○○동 132-25) 인천공장 등 5개소를 점검하였고,

2004.3.15 수질 및 유해화학물질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주)○○양행에 대하여 환경부서 담당직원 3명만 참여하였으며, 2004.3.8 및 3.9 대기 및 폐기물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는 민간인 1명 및 담당직원 1~2명

만 참여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더욱이 통합지도·점검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따라 각 분야별 지도·점검표를 활용하여 각 분야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배출업소 지도·점검표만 활용하는 등 통합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다.

##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연료의 회수처리 또는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연료의 사용 또는 공급량, 회수량 및 방법, 회수기간, 기타 저항유 등의 사용 또는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료의 회수처리 또는 사용금지 명령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주재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년 연료의 황함유율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하여 적발된 ○○산업, ○○○○, ○○정유 및 ○○기업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및 연료의 회수처리 및 사용금지 명령 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서로 갈음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05년에도 동일 사항으로 적발된 ○○기업, ○○금속, ○○금속 및 ○○정유에 대하여 과태료 및 연료 회수·사용금지 명령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 3.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민원처리 지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동 시설을 가동하기에 앞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한 자는 시운전 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적합하도록 동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시운전 기간이 경과한 후 15일 이내에 동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함과 아울러 시료를 채취·검사토록 함으로써 동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고, 동 처분을 받은 자는 정하여진 기한 내에 개선을 하고 이행보고를 하여야 하며, 개선이행 보고는 동 시행규칙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검사기간을 제외하고 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2.14 ○○실업에 대하여 1차 점검 및 시료채취를 하였고, 동 시료가 수질기준을 초과(6가 크롬, 총질소 및 불소)하여 '04.2.20 개선명령 처분하였으며(개선기간은 2.20 ~ 3.20), 한성실업에서는 '04.3.19 개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구에서는 '04.3.23 동 업체에 대하여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2차 시료채취를 하였으며, '04.2.25 개선이행 신고수리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04.3.30 동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 다시 불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구에서는 동일자로 2차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고(개선기간은 '04.3.30 ~ 4.30), 이 경우 200% 이상으로 초과하여 조업정지 5일을 병행 처분하였다.

동 처분에 대하여 한성실업에서는 '04.4.30 개선 이행보고를 하였고, 구에서는 2004.5.4 개선 이행상태를 확인함과 아울러 3차 시료채취를 하였는바,

동 건에 대한 처리기한이 2004.5.8까지였으나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고 처리기한이 경과하자 서구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처리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04.5.10 개선이행 신고를 수리하였다.

\* 동 건에 대한 시료검사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04.5.10 통보됨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구에서는 2차 개선이행 보고 시 이행확인을 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나서 처리기한 내에 보완조치를 하거나 개선이행 신고를 수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처리기한이 지나 개선이행 신고를 수리하는 등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 처 분 요 구 ]

1. 향후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는 환경부훈령(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는 개선명령 이행보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대로 처리하되, 특히 당해 건이 민원사무일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향후 황함유율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료사용금지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청문절차를 이행토록 하되, 공문서 직접전달 및 청문일정 조정 등 가능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청소행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사업장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서구 관내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장 현황

- **검암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공사기간 : '96.12.31~'06.3.31(공정율 : 95%)
- 사업면적 : 약 20만평, 수용인구 : 16천명
- 사업비 : 16,610백만원
- 시행청 : 서구청, 시공사 : (주)○○건설, ○○건설(주)

- **검암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05. 12월 기 준공(사업규모는 검암 1지구와 유사함)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면적 : 약 10만평, 사업비 : 20,368백만원
- 시행청 : 서구청, 시공사 : (주)○○건설, (주)○○엔지니어링, ○○개발(주)
- 공사기간 : '97.7.22 ~ '06.7.3(공정율 : 약 70%)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구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25만㎡ 이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교통·재해 영향을 평가하는 평가서를 작성, 환경부장관(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장관, 재해영향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기 준공한 위 3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실태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내용 이행실태를 살펴본 바(3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 실시하였음),

검암 1· 2 지구는 공정율이 95% 이상으로서 준공 직전에 있으나(검암 2 지구는 준공되었음), 검암 1· 2 지구의 경계지역인 서곶로(왕복 8차선 도로) 변은 서구에서 강화로 통하는 주요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주야로 가장 심한 도로중 하나인바, 동 사업지구 내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덜 받도록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설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검암 1· 2 지구 내에 현재까지 건축물이 들어서지 아니한 공한지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종 폐기물과 건축 잔재물들이 쌓여 있어 환경오염과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경서지구는 이미 공동주택에 1,300여 세대의 시민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택지나 공공시설 부지는 공한지로 남아 있어 역시 각종 폐기물들이 쌓여 있고, 기반시설인 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 진·출입로 외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경서지구는 당초 우수관을 공촌천과 시청천 방향 양측으로 설치하여 우수를 배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청천으로 배제되는 우수관이 통과하는 ○○○○○클럽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현재 우수관을 굴포천 방향으로 임시로 연결 설치하여 집중 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의 지중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계획 중인 단지 내 공원 4개소는 예산부족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단지 내 입주민들로부터 집중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검암 1·2 지구와 경서지구 공통적으로 수령이 30년 이상인 수목들을 이식토록 협의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검암 1 지구 내 수령 30년 이상된 상수리나무는 흔적조차 없으며, 경서지구도 사업지구나 주변이 식생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식하여야 할 나무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를 이식하지 않고 모두 훼손하는 등 협의내용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3개 지구 모두 당초에는 공동주택 입지 계획이 없었으나, 예산부족 및 사업성이 없어 2001년 이후 공동주택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공동주택부터 건축·분양하였는바, 경서지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형적인 사업장으로서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단지 내 공원 및 대중교통 수단 등 각종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입지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위 3개 지구 모두 당초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함으로써 검암 1 지구 내에 입지한 공동주택 단지와 학교는 왕복 4차선 도로로부터 5m도 이격되지 아니하여 교통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심히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기타 학교 및 공원의 배치계획 임의변경,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주민들과의 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음)

### [ 처 분 요 구 ]

1. 검암 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로변 시설녹지, 지구내 공원, 도로, 상·하수도, 공공기관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주민들이나 타 기관 등과의 협의지연 등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산적하여 있음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하수관 설치, 단독주택의 입주 등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검암 1·2 및 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은 토지 소유주나 관리자로 하여금 속히 처리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불이행

[위법부당내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동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매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표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매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7.1)

그러나 서구에서는 2005년 컴퓨터, 토너 카트리지, 사무용지, 위생용품, 보안등(매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아스콘 등 주요 품목을 구매함에 있어서(구매금액 총 425,230천원) 1개 품목(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 XP-26, 제조회사 레이저테크)만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고 그 외 품목은 일반 품목을 구입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06. 1월 시에서 '05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06년 구매이행계획을 당초 '06. 2. 17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06. 3월말까지 제출토록 촉구함에 따라 감사기간중('06. 3. 28) '05년 구매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위 품목 모두(100%)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였다고 허위로 실적을 제출하는 등 동 법률이 제정·시행된 취지에 불

부합하도록 동 제도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각종 물품이나 비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해년도 구매이행 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환경위생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행정상 조치] 개선(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건축공사나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자를 포함)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 전에 시·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위임)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각종 감사 때마다 동일 사례가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음에도 위 22건의 건설 또는 건축공사장을 누락시키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여 왔으며,

또한 서구(건축과)에서는 위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축공사 착공 신고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함께 받거나 환경부서로 하여금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2004년에는 8건, 2005년에는 5건의 건축공사가 신고대상 사업장 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아울러 서구(건설과)에서는 비록 건설공사 착공신고 시에 위 건축공사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함께 받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담당자

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9건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과 및 건설과 등과 협의하여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사업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관리업소에서 누락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축과나 건설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착공신고시 시공사나 담당 직원들에게 동 내용을 주지시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행정처분 부적정

폐기물배출자 등은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소행정과)에서는 2004.6.1 (주)○○○ ○○○(○○동 410-9)에서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보관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2004.6.22 행정처분 함에 있어서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하였고,

○○○환경(○○동 212-2) 등 4개소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방법 또는 보관량 초과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면서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폐기물처리업체나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위반·적발되어 행정처분 당하는 사항으로서 단순한 경고(과태료 포함) 처분보다는 위 규정에서와 같이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운반 등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변경 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아울러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다가 적발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상기 언급한 바대로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한 후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가중처분이나 고발조치 등 엄격히 법 적용을 함으로써 위법사항이 개선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서구(청소행정과)에서는 2005.1.24 폐기물보관창고의 지붕 및 벽면이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다가 적발된 “○○환경(주)-○○동”에 대하여 2005.2.15 과태료 400만원 및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고,

또한 2005.1.31 폐석고 등 폐기물을 사업장내 야적하다가 적발된 “○○○화학(주)-○○동”에 대하여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토록 “조치명령”을 하였으며,

또한 2004.7.20 폐기물 보관시설의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지 않고, 보관용기의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적발된 “(주)○○운수 - ○○동”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및 개선명령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들 위반업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또는 개선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분 및 고발 등 엄격히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위 위반업체나 사업장들에 대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한 이후 이를 확인치 않음으로써 이러한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명시하고, 특히 같은 법 제12조(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기준 등 위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여 위법사항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분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처분을 확행하여 행정처분 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 관련기관 :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각 군·구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업체 및 순환골재 등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부적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제 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38조(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제40조(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같은 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착공전에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사업장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자율관리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중점관리사업장은 연 4회 이상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소행정과)에서는 2004년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2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2005년에는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설폐기물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사일 현재 2006년 4월중에 처분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였다.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리 부적정

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규정(이하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하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함에 있어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선명령이나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이후에도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처분이나 고발 등 엄격히 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매립지 주변의 2개 업체[(주)○○○○○○, (주)○○○환경]는 순환골재를 각각 330만톤과 350만톤을 수년전부터 야적하고 있어 매립지 주변의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매년 개선명령 처분 등 경미한 처분만 반복하여 왔으며,

\* 최근 (주)○○○환경 및 ○○공사(주) 2개 업체는 집단화 시설 내에 입지하여 많이 개선되었음

동 사항이 사회 문제화 되자 2006. 3월경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및 도시개발과 등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하여 (주)○○○환경과 (주)○○○○○○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 등의 처분을 하는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였다.

### 3. 순환골재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위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4km 이상의 도로신설 또는 확장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중 1km 이상의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보조기층재 등에는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의 발주자는 순환골재의 재활용실적을 당해 사업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서구에 접수된 순환골재 재활용실적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순환골재의 처리(재활용)실적을 보면 2006. 1월 총 4,852천톤에서 2006. 3월에는 4,761천톤으로 약 91천톤을 사용하여 3개월간 총 적치량 중에 2%만 재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현행법상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사업장이 위와 같이 극히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순환골재 사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으나 서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다.

\* 순환골재 재활용 건에 대해서는 최근 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순환골재 재활용을 제고를 위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의무사업장의 규모나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2005년 10월 우리 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순환골재를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 관련부서 및 종합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 등과 협의하여 순환골재를 대량 소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업장 외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여도 구조적·안전성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골재 활용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확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각종 위법사항이 반복·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야적되어 있는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위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순환골재의 사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종합건설본부 및 각 군·구 등 유관기관에서는 순환골재 의무사업장에 대한 사용은 물론, 그 외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하여도 구조 및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검단출장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의료법 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8조(지도와 명령), 제50조(시정명령 등), 제51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한 경우에는 동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가중처분이나 고발조치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법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의료사고나 의료기관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 보건소에서는 2005.7.29 시 감사관실에서 진정민원으로 접수하여 이첩 통보한 의료과목 표시 등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정 형외과의원(○○동 ○○지구)”에 대하여 진정내용을 면밀히 검토· 행정처분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외곽 상단에 건물주가 “○○클리닉”이라는 간판을 붙였다고 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건물주에 대하여만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고,

아파트 건물 광고판 및 승강기내 거울에 “○○소아과”, “○○치과”등 동 의원의 일부 진료과목에 불과한 진료과목을 마치 각각의 의원이 있는 것

처럼 의료광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건물 외곽 전체를 “비만체형, 메조테라피, 비만치료실, 대항외과”등을 표기한 대형 프래카드로 뒤 덮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전화상으로 지시하여 모두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메디칼(○○지구 )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2005.10.12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 위 ○○○○정형외과 진정민원 건과 관련하여 시 감사실(조사2팀)에서 추진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미흡하여 보건소 실무자(당시 보건7급 ○○○)에 대해서 “훈계”처분함과 아울러 광고물 분야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음.

아울러 서구 검단출장소에서는 위 원당지구내 모든 건축물이 지구단위 계획상 3층 이상에는 각종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의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데도 위 “○○○○정형외과”와 관련한 진정민원 건에 대하여 건물전체를 대형 간판으로 진료과목을 층마다 설치하고, 옥상외곽에 “○○클리닉”이라고 대형간판을 설치하였는데도 철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까지 방치한 사실이 있다.

위 건 뿐 만 아니라 원당지구내 상업지역이나 근린시설 집중지역에는 이미 고층 빌딩이 많이 입지하여 있고, 예외 없이 각 건물마다 3층 이상에 각종 입간판이나 돌출간판이 부착되어 있음에도 검단출장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정하거나 3층 이상 건물에 외곽 간판을 허용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처분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 문책한 점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검단출장소에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라며, 그 외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당지구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3층 이상 입간판이나 돌출간판 등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센터 위탁운영·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서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
  - '04년 위탁계약 체결(계약기간 3년) : 수탁기관(○○의과대학교)
    - \* 센터장 : ○○의과대학교 ○○○
  - 연평균 운영비 지원금액 : 1억 5천만원 내외(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별도)
- 서구보건소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
  - '05년 위탁계약 체결 : ○○요양전문병원( 계약기간 1년)
    - \* 센터장 : 병원장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없음)
    - \* '05년 지원금액 : 138백만원
    - \* '05. 12월 계약해지('05년은 자격미달로 미신청)
  - '06년 위탁계약 체결 : ○○○○○병원(계약기간 2년)
    - \* 센터장 : 정신과 전문의 ○○○
    - \* '06년 지원금액 : 1/4분기 46,460천원

### 1.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관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한 수탁자 중에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재위탁 과정을 거쳐 위탁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에도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5년도 안내서 144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거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예외조항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보건소에서는 '05년도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하여 공개 선정을 하였으나 가천의과대학교 1개소만 사업을 신청하였고, 동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 2월 최종 선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05. 4~'07. 12월)

이러한 위탁·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일간지 등 보다 광범위한 광고 매체를 통하여 공모를 하여야 함에도 홈페이지와 관보만을 통하여 공모를 한 결과 1개소만 신청하고 이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로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시 가천의과대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는 정신보건센터장,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정신보건전문사회복사 및 보조요원 등의 역할분담만을 제시하였으나, 예산서상에는 센터장 외에도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월정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획서와 예산서의 불일치가 있었고,

아울러 구정조정심위원회 심의결과 위건을 포함하여 학교법인 가천학원 이사회의 의결여부 등 미흡한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통보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확인 또는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신보건센터에 지급되는 국·시비 등 지원금액이 입금되는 통장과 센터에서 사용하는 통장은 일치시키고 그 명의로 센터장명의로 통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에도 센터장(○○○)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운영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 2.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 운영·관리 부적정

한편 서구보건소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센터”)를 2005년도에 “○○○○요양병원”에 위탁·운영하였는바, ‘04. 12월 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정신보건센터와 마찬가지로 일간지 등 보다 광범위한 광고매체를 통하여 사업자를 모집하여야 함에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하여만 모집을 하였고 그 결과 위 병원 1개소만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동 병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05.1.7 동 병원에서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05.1.17 당시 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팀장 및 실무자 3인이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당시 동 병원이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거실 및 화장실 등 시설이 미비하며(당시 치매센터와 관련한 시설기준 등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복지시설 기준으로 확인·복명함),

또한 정류장에서 동 시설로 가는 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성이 상존하여 있으며, 차량도 전용차량이 아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인 관계로 이용자의 불편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놓고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정토록 방치하는 등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아울러 ‘05.1.24 동 시설에 대한 지침을 시에서 제정하여 시달하였고, 같은 날 “○○○○전문병원”을 구정조정심위원회에 심의토록 안건을 상정하

였는바(동 지침은 '05.1.26일자로 접수됨),

당시 동 병원은 위 지침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가 없어 자격이 미달됨에도 이를 위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심의·선정토록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06년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 병원은 자격이 미달되어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동 병원에서 집행한 예산내역을 일부 살펴본 결과 각종 의료기구(형태분류 보드판, 위생깔개매트, 만보기 등 약 450만원 상당) 구입 및 포스터 제작(220만원)시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고 지출하였으며,

정신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강사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병원 정신과 000과장에게는 3시간에 2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인여대 000교수에게는 '05.5.20일에는 2시간에 10만원, '05.11.16 및 11.18에는 2시간에 15만원을 지급하는 등 강사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지급하였다.

아울러 동 시설 운영('05년 2/4분기)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살펴본 결과 당초 등록환자 목표는 15명이나 5월 평균 8명, 7월 평균 12명으로 일년 평균 10인 미만으로 등록환자 목표에 비하여 이용환자 수가 상당히 낮았고,

IADL 프로그램(일상생활 적용 프로그램) 중 회상교실 및 한글 교실 등은 운영이 저조하였고, 음악교실 등은 실시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환자들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중 활력징후 측정, 외래진료 및 치매질환진료 등은 집에서 보호자와 주로 이루어지는 등 치매센터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하루 3~4명, 신경정신과 촉탁의의 진료 역시 1일 3~4명으로 그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치매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2005년 동 병원과 체결한 협약서에 제13조에 의하면 계약해지시 비품 및 집기 등은 즉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반납 및 인계, 사업비 정산 등을 촉구하였으나, '06. 1. 31에야 비품· 집기 등을 인계하였고,

회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는 '06. 2월말에야 정산보고를 받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비품· 집기 및 정산서류 등의 인수· 인계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06년 사업자를 모집함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와 관보만을 통하여 모집함으로써 “○○○○○병원” 1개소만 신청함으로써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동 병원은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 병원으로서 심의 시 “개인 건물에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위탁기관의 권리 등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4층에 입지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제시되었는바, 향후 동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처 분 요 구 ]

1. 향후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홍보 및 공모방법의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대외신인도, 운영능력, 이용자의 불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동 시설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영입하거나 관련단체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기타 센터장 명의의 통장개설,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현금 사용시 반드시 영수증 확보)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당시 보건복지부나 시 관련부서로부터 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아니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홍보나 지원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집단급식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들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타 부서로부터 공장등록 현황이나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 시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50인 이상 기업체 52개소중 28개소,

정원 35인 이상 보육시설중 14개소, 정원 5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및 정부 지원 보육시설중 각각 7개소와 1개소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 시설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감사일 현재까지 집단급식소로 신고 및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바 집단급식소를 관리함에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된다.

[ 처 분 요 구 ]

1. 기업체나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자료를 관련부서로부터 수시로 협조 받아 집단급식소 신고여부를 지도·독려토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중 및 식품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와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종업원 포함)는 매년 1회 군수·구청장(위탁의 경우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새로이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 등의 사유로 사전에 교육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중위생업소는 6개월 이내, 식품위생업소는 3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의 2004년 ~ 2005년 사전 및 정기 위생교육 위탁 실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영업 허가나 신고 전에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수가 많다는 사유로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소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중위생영업소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영업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지극히 부당하게 처리하여온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허가·신고 처리하여준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도록 지도·독려하되,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공중 및 식품위생 영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료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업종별 영업자 조합 또는 협회와 협의하여 반드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하고,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식품위생영업자에 대해서는 전 업종에 대하여 위생교육 수료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2005.5.22부터 '06.2.20까지 식품위생팀장이 공석이었던 점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주의를 촉구하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통식품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 현황
  - 2004년 235건, 2005년 336건
  - \* 주요품목 : 대기업 제품, 주요 수거장소 : 대형 할인마트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황 : 총 19명

### 1.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식품위생안전관리지침(보건복지부)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및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통식품을 수거·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거·검사를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수거대상 품목선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해항목 중심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년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 또는 유통점유율이 높은 30개 품목(특별관리 대상식품)에 대하여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규격을 검사하되,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수거를 지양하고, 위생취약지역 (재래시장, 연쇄점, 소형 슈퍼마켓, 역·터미널 주변,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관광지 등)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적 수거·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4~2005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시 월별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수거품목이 상이하여 계절별 위해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거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 보다는 대형할인마트 중심으로 유통식품을 수거·검사 하는 등 동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005.1.27 법개정으로 명칭 등 변경. 시행일 2005.7.27)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법률 제7374호 (2005.1.27) 부칙 제9조에 따라 개정전 법령에 의거 위촉된 명예식품감시원은 현행법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감시원들의 업무범위는 유통중인 식품 등의 수거지원, 관계법령 위반업소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속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이들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위촉된 모든 감시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들의 활동비로 1인 1일당 3만 5천원(활동비 3만원, 식비·교통비 5천원)을 지급하되, 1인당 연간 4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환경위생과)에서는 2005년 이들을 참여시켜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19명중 특정인 3명(○○○,○○○ 및 ○○○)을 1인

당 78일~81일을 참여시켰으며,

그 결과 2005년 전체 감시원 활동비 28,420천원중 ○○○에게 2,835천원(81일분), ○○○에게 2,730천원(78일분), ○○○에게 2,730천원(78일분)을 지급함으로써 특정인 3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전체금액의 30%에 달하도록 운영하는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 향후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함에 있어서 계절별 중점관리 식품을 수거·검사하되,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운영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주로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가좌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익시설	2003.4~2006.10	440 (보조금90,자부담10)	공중화장실 건립및부지매입	
아케이트설치공사	2006.6.~2006.11	3,067 (보조금90,자부담10)	아케이트설치 소방,전기,토목공사	

○ 가좌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구역안에 진입도로의 확충,소방시설,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으며,정부는 시장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 이월예산집행요령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명시이월 사업비는 타 목적의 용도로 전용이나 사용함은 지방의회의 결정사항 존중 및 이월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과 가좌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사장과 체결한 『 인천가좌시장 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서』에 따르면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추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갑”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70%까지 지급할수 있으며,“을”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 자부담금을 선집행한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하고,“갑”은 사업과 관련된 “을”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및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3.4.1 “2003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보조금 200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0백만원으로 “가좌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안내물 설치사업”을 자부담 20%인 100백만원의 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04년 10월 전년도에 교부받은 시비보조금 250백만원을 포함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당초 적정치 않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 사업비의 사업변경은 이월취지상 사업변경이 불가능하나 이를 가능하다고 검토하여 변경하였으며 ,2003년도 자부담 부담비율은 20%였으나 관련지침을 어기고 10%로 하향조정하여 추진하였으며,위 사업과 관계없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보상업무를 도로관리부서가 아닌 시장관리부서에서 추진하

여 보상완료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위 협약서 상에 자부담금 부담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2월 이전에 부담하여야 한다고 협약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12차례 독촉 공문만 시행한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가좌시장 현대화사업추진을 관련법령 등에 위배하여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시장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서상의 자부담금 확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본 사업이 정상추진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2005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내역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대상 기관	지도·점검실시	비 고
240,500	233,606	11개 학교 (유치원5,초등4 중1,고교1)	4개기관 실시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발육도모와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2004년부터 시범운영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대상기관은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품목은 친환경 품질인증 쌀,우리콩 사용한 제품으로 하고 두부,고추장,된장,간장,쌈장 등을 지원품목으로 하고 지원범위는 친환경 농산물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필한 우수농산물과 우리콩 사용제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기관 선정은 시교육청 및 여성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는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거 대상학교에서 해당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여 각 기관별로 신청한 월별구입계획에 의거 년 2회 교부하고, 급식공급업체 선정은 사업의 목적과 지원품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조례시행규칙 및 보조금 관련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5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4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외 10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3백만원,초등학교 40백만원,중·고등학교는 4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면서 지원대상 기관에서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함에도 일부만 확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결과 정산에 대하여도 규정된 일시에 제출치 않고 정산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치 않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정상처리한 사항으로 정산 처리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업무 추진시 관련규정 등을 명확히 숙지하여 정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구 분	계획수립	지도·점검	점 검 결 과				비 고
			계	주의	시정	기타	
2004 1/4	미수립	실시	8		8		
2/4	“	-					
3/4	“	-					
4/4	“	-					
2005 1/4	“	-					
2/4	“	실시	2		2		
3/4	“	종사자교육					
4/4	“	실시	6		6		

### ○ 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 현황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 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1회 정기단속은 직업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2004년도 유료직업소개소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업안정법 및 인천광역시 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치 않았을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도 1회만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도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치 않고 1/4분기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료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직업안정법 관련규정 등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점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하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한다라고 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 도시개발과에서는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00.2.16) 지장물 조서에 의하면 ○○동 199-8은 재무부 소유의 국유지상에 식당 2동 146.18㎡로 되어 있고, '02.5.1~'02.5.16 사업지구 내 지장물, 영업권 등 재조사를 위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동 199-8 건물면적 176.34㎡는 ○○○식당으로 영업시설 이전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복명하였고, '02. 9. 11일 동 건물에 대한 총 146.18㎡로 하여 지장물 및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03.5.27 서구청은 ○○○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4,119,050원, '03.8.30 영업이전비 4,650,000원, 이사비 711,400원(89.29㎡), 주거이전비 4,068,980원, 이주정착금 9,905,800원 등 총 83,455,23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은 실시계획인가일('00.2.16) 이전인 1978년 11월 4일 동 번지에 전입하였고, 이후 ○○동 151-3 ○○아파트 101-○○○호에 1991.2.2 소유권 이전 후 전입

(본인 단독)하여 살았으며 1998년 5월 27일 동 번지로 전입하였다가 바로 1998년 7월 2일 ○○아파트로 전출하여 실시계획인가일 현재까지 거주하였다. 이후 ○○○은 '01. 4. 23 동번지로 전입하면서 부인과 자녀와 분리되었던 세대를 합가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2001.4.16일 소유권 이전(매매)조치 하였다.

결과적으로 ○○○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동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거주는 가족전체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인 '91. 2. 2부터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인과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동 보상 물건지에 부적정하게 등재하였다고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에게 이주 정착금등 총14,686,18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 [처 분 요 구]

1. 손실보상업무 추진 시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하여 보상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한 근거에 의거 보상금 지급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원신근린공원 보상업무추진에 관하여

[위법부당내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5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 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원신근린공원조성사업 구역 내 ○○○의 토지 ○○동 199-○ 보상협의하고 15,708,000원('04.7.1)을 지급, ○○동 199-○의 3동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하고 205,908,250원('02.12.10) 등 2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의 ○○동 184-○(도) 13㎡는 '99년 서구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편입대상 토지였으나 시에서 '00년 실시계획인가시 누락된 사실이 있었고 '02년 보상계획 공고 열람시 동 토지에 대한 누락사실을 발견하여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음. 이후 신현동 184-○(전)에 대하여 '03.12.11일 협의보상 완료 후 247,596,000원, 누락되었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04.10.8일 보상협의 후 보상금 910,000원을 2회에 각각 지급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시 누락된 필지 ○○동 184-○에 대하여는 '06.1.5일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공원:원신근린공원)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하였다.

위와 같이 서구 도시개발과에서는 보상금 지급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보상대상에 대한 감정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원활한 손실보상협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일사업구역 내 수개의 보상대상이 있는 경우 일괄 보상토록 관련법에 명시되어있으므로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자에게 일괄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였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수개 있을 경우 보상 물건에 대한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동시에 의뢰하여 보상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826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설계변경 조치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공 사 명 : 가좌환경사업소 부근 도로개설공사

나. 도 급 자 : ○○종합건설(주)

다. 사업개요 : L=250m, B=20m

라. 계약금액 : 305백만원

마. 공사기간 : 2006.01.05~2006.07.03

###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12)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와관련 건설표준품셈에 의하면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강관비계의 경우 높이 2m 이하에는 수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며, 가로수의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결정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함에도

직고 2m 이하의 옹벽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강관비계가 11m<sup>2</sup> 과다하게 적용되어 있고, 은행나무 48주의 경우 조달청 고시가격보다 고가인 물가자료 단가를 적용하여 합계 2,826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이에대한 변경 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과다하게 계약된 2,826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금액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

[일련번호 : 6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27,035천원 및 환부 127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붙임 하수도사용료 체납집계표

### 2. 위법부당내용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3.10.27) 제1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적용 징수하게 되어있고, 그 부과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와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를 준용토록 명기되어 있음

또한 동조례 21조(독촉장) 및 지방세법 제28조의2(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위건 관련 서구 관할 하수도 사용가에 대한 체납상태를 확인한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 및 징수 등을 실시 하였으나 2001년 체납건수 545건에 11,292천원 2002년 체납건수 745건에 10,371천원, 2003년 체납건수 1,130건에 10,498천원, 2004년 체납건수 714건에 10,345천원, 2005년에는 체납건수 655건에 27,035천원 등 합계 체납건수 3,789건 69,542천원 상당이 감사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있음

## 하수도사용료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2조(원인지부담금 등)에 의거 공공하수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은 산정 방식에 의거 산정된 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구역내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뺀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그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음

이건관련 서구에서는 2006.03.17일 ○○동 145-5번지 소재 ○○화학공업이 증축 완료됨에 따라 이에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적용 단가를 허가년인 2005년도 754천원/m<sup>3</sup>으로 적용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825천원/m<sup>3</sup>을 적용 부과하여 127천원 상당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1. 체납된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도모하고, 과오납된 원인자부담금 127 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즉시 환부토록 조치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붙임 자료 참조

###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결정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함

이와관련 서구 관내에서 시행된 공사를 확인한바, 2004·2005년도에 시행된 『관내 맨홀 정비공사』의 경우 맨홀 침하의 주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재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공사 실시된 현장중 수개소에서 맨홀 하부가 부실하게 벽돌 등으로 조적되어 지속적인 침하가 예상 됨에도 이를 임시 방편으로 정비 하는 등 공사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주물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공표

한 고가의 수목단가를 적용하여 느티나무 단가를 과다하게 설계에 반영한 사실이 있음

또한 공사 시행 과정에서도 현장 여건과 설계서가 불일치 될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변경 반영 하여야 함에도 『가좌동소하천정비공사』의 경우 설계에 임의로 반영된 사토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확보하지 않고 시공자에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사토처리 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가정로~석남전화국간 인도정비공사』의 경우는 현장 도로내에 한전주가 위치하고 있는점을 감안 정비 공사시 인도를 30cm 확폭하여 한전주를 인도내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이에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3

[제 목]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설계용역 사업대가 산출 부적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비고란 6에 의하여 분류된 기술부분(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은 공사비 효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사비효율에 의한 방식은 개략공사비에 일정효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도 서구청에서 2004. 9.20 시행한 인천서구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설계내역을 보면 실시설계용역을 공사비효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고도 제경비(30%)와 기술료(10%)를 반영하여 5,789천원상당이 과다 계상되는 등 설계용역 사업대가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사실이 있음.

### 2. 설계용역추진 부적정으로 인한 사업예산 낭비 초래

실내 게이트볼경기장 건립 설계용역 과업범위는 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인·허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실시 설계서를

작성할 시에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비 산출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법에서 정한대로 필요한 인·허가 서류는 과업수행 중 수급자로부터 제출 받아 관련부서와 협의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으로 인한 원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은 실시설계 전 이행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에 맞도록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구청에서는 법절차 이행완료도 되지 않았는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2005. 2.19 용역사로부터 접수된 준공계를 2005. 2.25 내부방침을 통해 준공처리 하였다.

2005. 2.25 내부방침 내용을 보면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 : 원신근린공원(1단계구간)]조성계획(변경)결정과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원신근린공원(실내게이트볼경기장)]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는 인천도시공원위원회를 3~4월중 개최할 예정에 있어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05. 5.30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심의 요청하여 2005. 7.15 도시공원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녹지축 보존 및 연결가능토록 실내 게이트볼경기장 건축물 위치를 조정하고 경관, 채광, 자재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자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에 업무 인계하여 당초 설계를 사용하지 못하자 2005. 9.12 ○○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용역비 : 33,000천원)체결하여 재설계하는 등 설계용역추진 부적정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결과적으로 설계용역과업에서 근린공원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인·허가 절차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수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용역중지 및 과업기간연장 등을 하여 법 절차이행 결과에 따라 공사비 산출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성급히 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계획 변경된 사항이므로 설계서를 수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도록 설계용역추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3. 과업지시서 불이행 및 설계용역감독 업무 소홀

설계용역감독자는 설계용역 수급자가 계약 체결되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규정 이행 여부사항을 확인 감독하여 수급자가 과업수행을 소홀히 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위 사업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급자는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4.10.21 수급자가 제출한 착수계로 가름한 채 별도의 과업수행계획서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목적으로 기술자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자문횟수는 기본계획 시, 실시설계 시, 성과품작성 시 단계별로 기술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도 전문기술자가 아닌 구청장, 국장 및 각 단체임원으로 구성된 용역중간보고회만 시행하고 기술자문위원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에 수록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설계용역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 협약서 체결 부당으로 인한 책임성 결여

인천서구실내게이트볼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생활체육협의회와 협약체결한 사항을 보면 인천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4.10.21 실내게이트볼경기장에 대한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서를 참고하도록 서구청으로 통보하였다. 타지방에서 실시한 협약서 주요내용 중 업무분담은 “갑”(자치단체), “을”(생활체육협의회) “갑”은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협조와 부지제공과 교부금 부여만 하는 것으로 하였고 “을”은 경기장 건립에 따른 설계, 감리용역, 공사계약체결을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갑”은 광주광역시와 내용은 동일하고 추가로 설계 및 감리용역, 공사계약 등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을”은 설계와 감리용역은 참여치 않고 공사계약만 “갑”과 함께 체결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004.10.25 서구청에서 협약서 체결초안 작성은 타 자치단체와는 상이하게 사업관련에 대한 인·허가 업무 및 부지 제공만 주관하고 설계, 감리용역, 공사계약 일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협약서(안)을 작성 2004.10.26 통보하였으나 2004.10.28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사계약을 제외한 설계, 감리용역 등 계약체결은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하는 것으로 정정요구하자 2004.11. 3 내부결재를 득하여 협의회 요구내용대로 협약서를 조정하여 통보하였다.

조정된 협약서는 생활체육협의회의 행정능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설계, 감리용역 계약업무를 서구청과 공동 수행목적으로 체결하고도 당초 설계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서구청 주관으로 재설계용역 및 수정설계 등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재설계용역 추진 시에는 업무를 인계하였다 하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등 책임 없는 행정을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① 위 “1, 2, 3항”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위 “4항”과 관련하여 협약서 체결 등에 대하여 재 작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5,323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봉수대길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1. 설계변경 시행 부적정

공사감독자는 설계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면·수량산출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승율로 적용되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잡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서구청에서는 2005. 9.12 위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신규공종을 별도 분류하여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승율(제경비)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당초 계약비율이 아닌 2005년 하반기 발표된 요율로 조정 적용하는 등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음.

### 2. 시설물설치 기준 위배로 인한 과다설계

도로표지병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우천시

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불필요한 표지병 설치로 인해 오히려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물 및 관리지침에 따라 표지병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표지병설치 편에 의하면 시가지도로에서의 직선도로 구간은 8m마다 1개씩, 곡선부는 2~4m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872개만 설치하면 되는데도 서구청에서는 실시설계 당시 이를 무시하고 2m마다 1개씩 총1,528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과다설계 적용함으로써 공사 발주하여 2005. 9월 시행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 총1,648개를 설치함으로써 18,865천원(제잡비포함)상당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었음.

### 3. 도로개설에 따른 행사비용 설계변경 부적정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 작성은 회계예규2200-105-8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을 하여야 하며, 법정경비를 제외한 공사목적과 관계가 없는 추가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당해공사 시설부대비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서구청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위하여 2004. 8.18 기공식 행사를 계획하여 소요되는 행사비용 약2,570천원은 시설부대비 등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시공사 우선부담 후 설계변경으로 정산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였으며, 2005. 6.22 에는 또다시 개통식 행사를 계획하면서는 행사비용에 소요되는 금액산출과 지출방안도 없이 기공식과 동일하게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공식 비용은 2005. 6.29 제1회 설계변경 시 8,832천원을 반영하였고 개통식비용은 2005. 9.12 제2회 설계변경 시 7,760천원 총16,592천원(직접공사비)을 도급자계약내역서에 부적정하게 반영하였음.

특히 소요된 행사비용은 당해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도급 계약된 승율(제  
잡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4.7%)와 이윤(15%)을 반  
영하는 등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위배함으로서 제잡비 포함  
21,915천원을 부적정하게 설계 변경하여 약5,323천원의 사업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① 위 “1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시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다 또는 과소한 설  
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견실시공을 못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  
록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위 “2항”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시설물 설치기준에 위배되게 과다하게 설계되어  
시공함으로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위 “3항”과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도급내역에 반영된 5,323천원상당에 대해서는 추징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정2,429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보전비용(조경) 중복지급**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가계상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지침(회계예규 2200-04-105-8)Ⅲ.공사 원가계산 규정 제18조 경비세목구분 21. 환경보전비용 반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가계산 또는 표준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원가계산 등이 곤란할 경우 순공사비에 공사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달청고시 제경비율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직접공사비로 반영하였다면 제경비에서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서구청 도시개발과에서는 2004. 5.25 (주)○○건설 대표 ○○○과 계약하여(도급액 1,452,022천원) 2005. 8.23 준공한 “진주체육공원 조성공사” 를 설계하면서 환경보전비로 집행 가능한 세륜 세차시설을 직접공사비로 계상해 주고도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공사종류별로 정해진 요율 0.2%를 중복 적용하여 줌으로써 공사비 약 2,429천원 상당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다 지급된 환경보전비 2,429천원상당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원가계산 작성 시 제비율 적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10,532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보전비용(토목) 중복지급**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에 있어서 원가계상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지침(회계예규 2200-04-105-8)Ⅲ.공사 원가계산 규정 제18조 경비세목구분 21. 환경보전비용 반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가계산 또는 표준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되 원가계산 등이 곤란할 경우 순공사비에 공사종류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달청고시 제경비율 작성요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직접공사비로 반영하였다면 제경비에서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서구청건설과에서는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보전비로 집행 가능한 세륜 세차시설을 직접공사비로 계상해 주고도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공사종류별로 정해진 요율 0.3%를 중복 적용하여 줌으로써 그 결과 봉수대길 도로개설공사 8,890천원, 검단고교~산144-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316천원, 초지대교~경인운하 간 도로포장공사 1,326천원을 각각 적용하여 공사비 10,532천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다 지급된 환경보전비 10,532천원상당에 대해서는 즉시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공사원가계산 작성 시 제비율 적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원가계산(제잡비)적용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건설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500톤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부터는 100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리고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 콘크리트 및 폐 아스콘에 대해서는 자원 활용을 위해 재활용폐기물로 선별처리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사업대상 분류는 건설공사가 아닌 폐기물 운반과 처리가 주 공종이므로 용역사업으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내역 구성은 폐기물운반과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 두 공종으로 구분 작성하며, 단가적용은 수수료는 견적가로 비교하여 가장경제적인 단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운반비는 실 거리(인천지역공통 :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입구)로 단가 산출하여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원가계산(제잡비)은 사실상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은 용역발주사항이므로 순공사비에 부가가치세만 산출 반영하면 되는데 운반비를 단가산출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관련법 적용근거가 없는데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건설공사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관리의무는 발생분에 대한 폐기물의 상차를 원도급사에서 시행하도록 설계 적용되어 있어 현장에 야적된 폐기물의 관리는 원도급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용역업체는 폐기물관리에 소요되는 법적경비인 각종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의 반영은 필요가 없는데도 산출적용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제잡비)의 반영여부는 사실상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발주처마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원가계산(제잡비)이 반영되는 사유가 폐기물운반비를 단가산출로 계상되었다는 근거로 하여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적용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업종이 폐기물수집운반이므로 운반비에 대해서는 경비항목으로 구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재 산출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만을 적용하게 되므로 최소비용의 법적경비만 적용되어 사업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도 서구청에서는 폐기물처리용역을 공사원가계산 방식으로 제잡비율을 산출 적용하여 사업예산을 아끼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동일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각별히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불법건축물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소방서 통보사항 미조치 현황(붙임 참조)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1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 이라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제1항에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서부소방서에서 2004 ~2006년까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총 50건에 대하여 조치후 회시토록 서구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3건에 대하여는 통보 후 미조치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처리지침에 따라 고발을 하지 않았고, 5건의 대하여는 이행강제금(150,145천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았고, 3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재산조회후 압류를 했어야 함에도 압류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건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함에도 위반건축물대장 등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소방부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후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후 관련기관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불법건축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장기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등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장기미착공 현황(붙임참조)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 635-3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5월이 경과하도록 착공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2006년 3월 31일 감사 당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착공기한이 도과되었을 경우 사전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장기미착공사례가 없도록 건축허가취소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축허가서 교부시 면허세·국민주택채권 미징구

[위법부당내용]

건축허가서를 교부 할 경우 지방세법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제1항에 의거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제1항 제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동 36-28 등 4건의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서 교부시 면허세(108천원) 및 국민주택채권(5,190천원)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6.03.31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건축허가서 교부시에 각종 제세공과금(면허세 채권 등)을 징구하  
시기 바라며, 특히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연기할 경우 제세공과금 납부여  
부 확인 후 착공신고 연기처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수행실태 점검·평가 소홀

[위법부당내용]

주택법 제24조 제2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한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감리자의 업무) 제2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1999-22호)에 의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현장관리,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점검·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에 대한 점검·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서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감리수행실태 점검·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의 분기별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허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주택건설사업승인 부적정 처리현황(붙임참조)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20호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적합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건설기준등에관한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2항에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규정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구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동주택의 배치·공동주택 주출입로의 폭 및 8미터 이상 단지내 도로에 보도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주출입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설계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사위법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 조치 소홀로 사용검사 지연

[위법부당내용]

임시사용 승인 현황

사업 승인일	임시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위 치	연면적 (㎡)	사업주체	용 도	사 유
2002.10.14	2005.04.27	2005.06.13	불노동 189-1 외27	67,052	○○산업(주)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계획시 승인조건인 국방부 및 산림청 소유 대지소유권미확보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 20호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등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에 적합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2. 10. 14 위 건의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승인조건인 국공유산에 대한 용도 폐지절차 이행 및 매각신청을 하시고 착공신고시 동 매각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착공후 1년 이내 동 국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

료하여 사용검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사업승인조건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사업주체에서 2002. 11.01 착공시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등의 조치가 없었고, 또한 사업기간이 2005.04.27까지 임에도 승인조건 이행을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승인조건이행요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2005. 04.27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사용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였고, 2005.06.10일에서야 사업주체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용검사를 신청 2006.06.13 사용검사함으로써 사용검사가 2개월 지연되어 입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지연케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사업승인후 승인조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주체가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승인조건 이행요구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주시기에 소유권 확보가 지연되어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감액 75,194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설계변경 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공 사 명 : 석남 완충(시설)녹지(1-1단계) 조성공사

나. 도 급 자 : (주) ○○건설

다. 사업개요 : 조경수 식재 50,000주 편의 및 휴게시설, 운동시설

라. 계약금액 : 2,934백만원

마. 공사기간 : 2005.10.25~2006.06.07

###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에 따라 설계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와관련 위 공사에 적용된 수목 식재중 관목류(개쉬땅나무 외 13종) 및 지 피류(꽃잔디 외 12종)의 경우 대부분이 균식되는 수종이며 현장확인 결과 공 원 조성하는 복토재(평균 2m 성토예정)가 양질의 토사로서 기초적인 시비만 하여도 식생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공사를 완료한 『석남완 충(시설)녹지 조성공사』도 기초적인 시비를 실시 하였으나 생육에 큰 문제가 없 는점을 감안, 수목별 영양제·증산억제제·토양개량제 등 과도하게 설계에 반영

된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하여 75백만원 상당을 감액조치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과다하게 계약된 75,194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2,000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품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2. 위법부당내용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거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 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보증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 내역에 반영 하였으나, 동 비용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의 단가를 적용한 것이며 수급인은 착공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에 품질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자체시험 및 의뢰시험으로 분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동 사항이 미 이행되고 있으며,

자체 시험의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품질시험관리인이 원가계산시 계상된 간접노무비에 그 비용이 계상한 만큼 그 인건비를 제외한 품질시험비를 지급 하여야 하나 자체시험 및 의뢰시험의 구분없이 기성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 『품질관리 소홀에 대하여』

우·오수 등 맨홀공사시 맨홀틀은 맨홀 구체와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어야 하며, 맨홀구체와 맨홀틀과의 간격이 발생시는 맨홀구체와 동일한 재질로 간격재를 설치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나 일부 구간에서 시공 편의상 간격재를 벽돌로 시공하여 추후 차량 반복 차중에 의한 파손이 우려 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1. 경서지구의 과다하게 계약된 품질관리비 12,000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2. 부실시공된 맨홀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시공 완료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문화공보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하자보수공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공 사 명 : 서곶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하자보수)

나. 도 급 자 : ○○건설(주)

다. 사업개요 : 농구장 28×14.9m, 상부 우레탄포장 7mm

라. 계약금액 : 908백만원

마. 하자기간 : 2005.06.07~2005.7.13

### 2. 위법부당내용

공사 감독자는 인천광역시건설공사감독자의업무처리규정(2000.06.19 훈령제 962호)에 의거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2005.08.09 ○○건설(주) 대표 ○○○와 계약 체결하여 2004.10.22 공사 준공 된 서곶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농구장이 공사 준공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바닥 뒤틀림이 발생되어 2005.05.25 하자보수 지시 하였으 며, 메카건설에서는 하자보수 공법을 당초 아스콘포장위 우레탄 포장으로 시공 된 것을 시공개선 차원에서 콘크리트포장위 우레탄포장(두께 7mm)으로 변경 요청후 2005.7.23일 하자검사 준공 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현장 확인결과 우레탄포장 부분 두께가 평균 2mm로서 설계

에 크게 미달됨에도 이에 대한 검측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등 하자보수 공사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재시공 완료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현 황]

< 검암 1,2지구 연결보도육교 설치공사 >

- 계약금액 : 당초 579,898,000원, 최종 576,400,000원
  - 설계변경 2회, 준공정산 1회, 총 3,498,000원 감액
- 공사기간 : 당초 04.11.10 - 05.2.9, 최종 04.11.10 - 05.12.27
  - 공기연장 4회

[위법부당내용]

«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규정에 따르면 추정 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타 5백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있다.

서구 도시개발과 에서는 2004.11.3 계약금 579,898,000원의 검암1,2지구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리관 결재를 득하여 지

출결의 하였으나, 이후 05.5.31 동일 공사건에 대하여 9,207,000원을 증액 설계변경하면서 변경계약서는 별도의 결제과정 없이 경리관인 만을 날인하고 지출결의서는 당초에 경리관 결재로 계약된 사항임에도 경리관을 배제하고 분임경리관 전결로 결재를 득하였으며, 05.9.27에도 동일 공사건에 대하여 7,130,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면서 변경계약서는 별도의 결제과정 없이 경리관인 만을 날인하고 지출결의서는 분임경리관 전결로 결재를 득하였고, 06.1.20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결의 시에도 분임경리관 전결로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계약 보증금 징구 및 보증서 관리 소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 보증금을 납부케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55조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84조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시에는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급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서구 도시개발과 예서는 2004.11.3 검암1,2지구 연결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79,898천원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납부 받았으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급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관련지출증빙서류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는 등 위건 공사와 관련하여 5차례에 걸쳐 보증서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2005.2.5 동공사에 대하여 당초 준공기한인 05.2.9에서 05.6.15로 준공기한을 연장계약 하면서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납부 받지 않아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공기연장 계약에 따른 선금 보증서 징구 소홀 》

행정자치부예규 제141호(2004.3.9)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구 도시개발과 에서는 2004.11.26 검암1,2지구 연결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기간(04.11.3-05.2.9)을 계약이행기간으로 하여 선금 270,000천원에 대한 선금금보증서를 제출 받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05.2.5 준공기한을 05.2.9에서 05.6.15로 연장계약 하는 등 총4회에 걸쳐 321일의 공기를 연장하면서 이 기간에 대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아 회계 업무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기성금 지급 방법 부적절 》

행정자치부예규 제141호(2004.3.9)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제5조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액에 계약금액 대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곱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서구 도시개발과 에서는 2005.9.14 검암1,2지구 연결보도육교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위 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 207,331,290원 만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선금총액인 270,000,000원을 정산하고 기성금을 지급함에 따라 62,668,710원을 덜 지급하게 되어 회계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1. 향후, 계약내용 변경, 보증금 관리, 대가지급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종 회계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관계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도시개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단체수익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익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여 가격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익계약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3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서구 도시개발과 에서는 2004.10.5 및 2004.12.27 두 차례에 걸쳐 추정가격 각각 158,543천원, 53,586천원의 스테인레스 보행등주 구매계약을 시행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적절한 응찰과정에 의한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작성에 의한 시담과정 없이 견적서만을 제시 받아 가격을 결정하여 ○○○○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단체수익계약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필히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적절한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 낙찰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증서 관리 및 위임 전결 사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55조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84조에 의거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 납부 시에는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급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 또는 시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기타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있다.

서구 건설과 에서는 2004.5.6 ○○○동 570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43,265,340원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납부 받았으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급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관련지출증빙서류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는 등 위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선금 보증금, 설계변경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등 4차례에 걸쳐 보증서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2004.8.6 동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 243,265,340원에서 251,405,000원으로 설계변경하면서 당초에는 전결규정에 따라 경리관 결재로 계약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임경리관 전결로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1.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수급부에 의거 정리하여 따로이 금고 또는 공금 지급 대행점에 보관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각별히 유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8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건설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 분할설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및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26-2, '03.12.26)에 의하면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조물 정비 등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설계 및 계약하지 아니하고 일괄 설계하여 발주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구청 건설과에서는 관내지역 내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차를 두고 분할설계 하는 방식으로 2004.8.2 ○○○동 125-5번지 일원의 20개소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769천원), 2004.8.13 가정3동 599번지의 19개소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846천원) 및 2004.9.3 ○○동 407번지의 12개소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505천원)를 분할 발주 하였으며, 2004.10.19 연희동 ○○초교 일원의 16개소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714천원), 2004.12.28 ○○동 80-4외 12개소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설계금액 21,890천원)를 분할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다.

한편 계약부서(건설행정팀)에서는 ○○○동 125-5번지 일원외 20개소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769천원), ○○○동 599번지외 19개소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846천원), ○○동 407번지외 12개소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설계금액 21,505천원)가 분할 발주 되었음에도 일괄하여 경쟁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1. 향후에는 성질이나 규모, 시기 및 공종 등이 같은 공사 또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조물 정비공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설계 및 계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사회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 부적정

[처 분]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995년도 이전 융자		96-99융자		2000년도 이후 융자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융 자 금	372	1,868,000	288	1,057,000	84	811,000	-	-
상 환 금	314	1,628,000	231	820,000	83	808,000	-	-
체 납 액	58	176,673	57	175,090	1	1,583	-	-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고 재산세 납부액이 2만원 이상인 세대주 1인의 보증인을 세워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를 연체할 때에는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의하여 용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연체상황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하며, 불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 및 이자를 불입치 않을 때에는 용자받은 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용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총 58건 176,673천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하여 용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채권 확보를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19건 103,633,160원의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만 압류조치를 취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압류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체납된 대부분의 용자금이 95년도 이전 용자금으로 채권소멸시효(민법 제162조)의 완성에 따라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등 용자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1. 생활안정자금 용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용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향후 용자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민원지적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용자권한부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적전산사용자권한부여내역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코드	사용자명	권한부여일	비 고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LR○○○W	○○○	2005. 1. 23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시·군·구지적직7급 이상)

## 2. 위법부당내용

- 소관청은 지적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담당자 사용권한을 구분하여 사용자권한등록화일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는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 제13조 및 같은 규정 별표4 기준에 따라,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조회권한은 시·군·구지적직7급이상의 지적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서구 지적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및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9급 ○○○에게 사용자권한부여기준상 권한부여대상이 아님에도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프로그램명: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프로그램코드 : LR○○○W) 권한을 시·군·구 지적직 7급이상의 지적업무 담당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 권한을 2006. 1. 23일부터 현재(2006. 3현재)까지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어 사용자권한 부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관계법령 및 사용자권한부여기준에 따라 사용자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조회 권한은 해당권한부여대상에게 부여하여 지적전산자료의 보호관리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지적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토지이동신청 지연에 대한 과태료부과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목변경 지연처리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토지 목록

토지소재	지번	지 목	면 적	지목변경지목	준공일자	신청일자	비 고 (지연기간)
○○동	○○○-89	답	1,417	전	2002.5.31	2004.3.29	1년8월
	○○○-126	답	301	전	2002.5.31	2004.3.29	1년8월
	○○○-11	답	3,439	전	2003.6.3	2004.9.10	1년1월

### 2. 위법부당내용

- 토지소유자는 지적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 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지적법 제5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 사실, 과태료금액등을 과태료부과기준(지적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의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 서구 지적과는 2004. 3. 29 민원인 ○○○이 신청한 서구 ○○동 249-89, 249-126번지 지목변경(답→전)신청과, 2004. 9. 10 민원인 ○○○이 신청한 서구 ○○동 249-11번지 지목변경(답→전)신청에 대하여 지적법 제5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지목변경신청지연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토지목록의 토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과태료를 부과 납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지적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설치 현황

구 분	설치점수	설치년도	설치장소	비 고
계	164	2005.11	검암동 검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적삼각보조점	2			
지적도근점	162			

## 2. 위법부당내용

- 지적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은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청이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 좌표,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측량성과 보관장소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과는 2005. 11월 서구 검암동 검암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과 관련 설치한 지적삼각보조점 2점, 지적도근점 162점 합164점에 대하여 2005. 11. 14일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검사 완료된 지

적측량기준점을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 고시하여야 하나 고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지적삼각점 2점, 지적도근점 162점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청 지적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토지특성조사를 소홀히 한 내역

토지소재지	토지특성		토지특성변경내역	개별공시지가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당초	변경	
검암2지구○○	공원	일반주거지역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13호 도시계획결정(변경) 지적승인(2000.6.27)	89,100	283,000	2001
				92,400	293,000	2002
				107,000	340,000	2003
가정동○○	전	주택(주거용)	단독주택건축사용승인 (2003.12.11)	80,900	203,000	2004
	전	주택(주거용)		115,000	291,000	2005

## 2. 위법부당내용

-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필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sup>2</sup>)을 말하는 것으로서,
- 특히,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 사항중 토지이용 현황조사는 토지가격형성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관련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산정을 하여야 하나,

- 인천광역시 서구 지적과에서는 상기 토지특성조사를 소홀히 한 내역과 같이 검암2지구○○ 토지의 특성이 2000.6.27일 당초 공원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가정동 ○○토지는 당초 농지(전)로 이용되었으나 2003.12.11 주택으로 사용승인 되어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종전의 토지이용현황대로 토지특성조사를 하였으며, 특히 도시계획사항변경이나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는 내부적으로 확인가능 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수정할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특성조사를 소홀히 하여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1. 1 기준, 7. 1 기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항 변경이나 건축물사용승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이용이 변경된 토지는 관련부서의 관련대장이나 관련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토지이용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국세,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적측량(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결과도 불비내역

측량종목	의뢰번호	토지소재 및 지번	측량일	측량자	비고
현황	○○	대곡동○○○	2004.6.11	○○○	현황구조물표기누락
	○○○	경서동○○	2004.10.20	○○○	현황구조물표기누락
	○○	경서동○○	2005.4.4	○○○	현황구조물표기누락
	○○	경서동○○	2005.11.29	○○○	현황구조물표기누락
경계복원	○○	경서동○○	2004.8.10	○○○	건물점유현황표기누락
	○○	금곡동○○	2004.10.27	○○○	건물점유현황표기누락
	○○	경서동○○	2005.7.12	○○○	건물점유현황표기누락

## 2. 위법부당내용

○ 지적측량을 측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5조제1항 제5호에 의거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45조 제3항 규정 및 동규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계복원측량결과도와 측량성과도에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 하여야 하고, 지적

사무처리규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의거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도시방법에 의하여 현황구조물의 위치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나,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에서는 2004. 6. 11 측량한 서구 ○○동○○ 외3건의 지적현황측량과 서구 ○○동 ○○외2건의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함에 있어서 측량대상토지의 지상구조물이나, 점유현황선을 붉은 점선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시 별표4의 도시방법에 의하여 현황구조물의 표기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측관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는 때에는 측판점, 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거리를 기재하여 주시고,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 및 지상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결과도 작성시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1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측량기일 지정 부당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측 량 의 퇴		측량종목	토지소재	착수일	비 고
일 자	번 호		지 번		
2005.3.31	○○○	분할	왕길동○○	4.7	2일지연
2005.4.8	○○○	분할	검암동○○	5.4	13일지연
2005.6.8	○○○	분할	오류동○○	6.15	2일지연
2005.12.9	○○	분할	경서동산○○	12.21	7일지연
2005.5.6	○○○	경계복원	불노동○○	5.17	6일지연

### 2. 위법부당내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하며, 지적측량의회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의하도록 지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하고 있으나,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사에서는 업무량이 폭주한다는 이유로 2005.5.31 ○○동○○(토지분할 ○○) 토지분할측량외 4건의 지적측량에 대하여 측량의회인과 합의하여 측량예정일을 지정하는 것처럼 “일자리정” 사유로 측량기간을 2 ~ 13일 부당하게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의 측량기간을 지켜서 처리하시되 지적측량의회인과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업무폭주로 인한 경우에는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적측량의회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2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구 제1공영주차장(주차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서구 제1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단위:백만원)

소재지	규모	사업비	개방일시	운영주체	주차요금	비고
서구 연희동 ○○○	철골자주식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면수 301면	5,897	2005.12.1	시설관리공단	2급지 적용	직원에 한해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요금 적용

주차장법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5.11.12준공된 서구 제1공영주차장을 2005.12.1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50% 감면, 8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 감면, 자가용승용차 부제참여차량은 2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

차요금을 징수하고 월 정기 주차를 원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조례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단체계약을 통하여 30% 할인과 10부제 참여차량은 20% 감면할수 있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출입하는 직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를 추가하여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 총무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직원전용 주차장 이용계획』  
【총무과-10376(2005.11.22)】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서구 제1공영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서구 관내 노외 및 노상주차장을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구청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나,

민원인이 보다 편하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직원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확대하여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직원차량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설주차장의 경우 단체계약 30%, 부제참여차량 20%, 상시출입차량 50%를 감면하여 월이용료가 60,000원에서 16,800원으로 적용되고, 공영주차장의 경우 단체계약 30%할인 부제참여차량 20%를 감면하여 월 이용료가 60,000원에서 33,600원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직원차량에 대한 감면을 실시함으로써 2005. 12월 직원주차료 징수액이 공영주차장 징수기준시 279명 9,374천원, 부설주차장 기준시 279명 6,206천원으로서 그 차액이 3,167천원을 미징수 하였으며 2006년 1월 미징수분 1,713천원, 2006년2월 미징수분 2,607천원 등 3개월 동안 총 7,550천 여원의 주차요금이 청사내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관련규정 검토 및 개정 등에 따른 대안을 확보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및 공영주차장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등의 검

토 및 개정 또는 운영에 따른 적정한 대안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3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현 황]

-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구본청	의회	보건소	출장소	동	공단
합 계	89	54	2	7	6	16	4
승용차	25	18	2	3	2		
승합차	9	7		1	1		
화물차	37	13		2	2	16	4
특수차	18	16		1	1		

[위법부당내용]

### 1. 관용차량 정수관리에 관함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고, 같은 규칙 제4조 1호에 의거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수승인, 차량구입, 규격, 관리부서 등에 관함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에서는 “차량정수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관리카드”만을 작성 비치하여 차량정수 승인내역 및 정수 승인 후 실제 구입차량과의 상이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차량 정수 승인 후 구입관리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 II. 관용차량 유류지급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규칙 제4조 3호에 의거 “차량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유류지급 및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및 일부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에서 명시한 “차량유류수불대장”이 아닌 임의서식으로 차량 주유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여타부서에서는 “차량운행일지”만을 작성하면서 차량운행 및 주유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당하게 유류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유류 주유시에도 “관용차량주유내역”(임의서식, 자료 1)을 비치하고 주유일자, 차량번호, 주유량을 기재한 후 주유자 서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유소에 이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으나(관용차량 주유실태, 자료 2), 실제 주유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없어 부당 주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차량정수 승인 내역과 실제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 또한 같은 규칙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라 “차량유류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용차량 주유현황을 관리하시는 한편 주유방법에 있어서도 그 주유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금번 사항을 여타 관용차량 운영부서에도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4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미배정 정수물품 예산편성 부적정

[현 황]

○ 정수 미승인 물품구입 현황

(단위 : 대, 천 원)

구 분	부서명	품 목	수량	구입금액	구입일자	예산편성	비고
	합 계		4	10,180			
2004	계		3	6,680			
	○○○○국	비디오카메라	1	1,250	04. 3.25.	04.본예산	
	○○○○과	냉온풍기	1	1,600	04.12. 7.	04.본예산	
	○○○○소	앰프	1	3,830	04. 5.25.	04.1회추경	
2005	계		1	3,500			
	○○3동	전자복사기	1	3,500	05. 1.17.	05.본예산	

[위법부당내용]

○ 「(구)지방재정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18044호)」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에서는 물품구입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의 정수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정수미승인 물품 또는 정수관리 비대상 물품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정수미승인 물품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정수가 배정된 후에 이를 확인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그 집행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정수 미승인 물품구입 현황”에서와 같이 2004년도에 ○○○○국에서 구입한 비디오카메라 외 2종 6,680천 원 상당과 2005년도 ○○3동 전자복사기 1종 3,500천 원상당의 정수물품의 정수가 미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구입하게 하는 등 예산편성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에서는 물품관련 예산을 계상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물품의 경우 물품관리 부서에서의 정수 배정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5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현황 : 붙임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75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그 성격이 일시예치금으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규칙 제76조에 의하면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와 내역서(별지 제65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같은 규칙 제77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도래된 세입세출외현금은 반환받을 권리자의 청구에 의거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비치, 정리하면서 반환기간이 도래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청구시효가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에서는 1990년 이전부터 감사일 현

재까지 내역서를 비치, 정리하고 있지 않고 있어 2006. 3.29.현재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1,191,734천 원 중 631,355천 원에 대하여 예치사유 반환기간의 경과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심지어 15년 이상 반환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치금도 있어 횡·유용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로 내역서를 비치한 후 그 수납 및 반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있도록 정리하시고,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당하게 관리하시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련번호 : 96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환경개선부담금 대납처리 절차 및 방법 부적정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사례

(단위 : 원, 2005. 2.28일 현재)

일일 수납현황		씨티은행 서구청출장소 수납		기타금융기관 수납		당일 인출금액	당일 통장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4	3,411,590	50	3,200,400	4	211,190	3,151,910	6,709,028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1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추진하면서,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전화통화 등을 활용해 부과대상자가 원할 경우 당해 환경개선부담금을 통장(명의:서구청, 자료1)으로 입금 받아 고지서를 재발부하여 수납하는 형태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 그 대납과정을 살펴보면 부과대상자가 환경개선부담을 체납 중이거나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분실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대납)하고자 환경위생과에 전화통화후 통장에 납부금액을 입금시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통장입금자 통화기록부”(임의양식, 자료 2)에 통화일자, 민원인성명(납세의무자), 차량번호, 전화번호, 비고란에 금액 등을 기재하고 통장에서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수납확인을 하고 당일 또는 익일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 이때 인출을 하는 과정에서 인출에 대한 내부결재 등이 없이 단지 통장에 입금자 옆에 수기로 부과대상물건을 기재하여 인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단지 부과대상물건 만을 기재하여 인출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인출된 금액이 실제로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 2.28.에 수납된 현황을 보면 총54건에 3,411,590원이 수납되었고(환경개선부담금 수납일계표:인천광역시금고, 자료 3) 이중 씨티은행 서구청 출장소를 통하여 수납된 금액은 50건, 3,200,400원이고 이날 통장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을 목적으로 인출된 금액은 3,151,910원(통장사본, 자료 4)으로 48,490원의 차액이 있어 대납이 아닌 직접 납부한 금액이 있다고 할 경우 인출된 금액이 정당하게 대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입금된 금액 중 전화통화 후 입금자와 부과대상자의 명의를 상이하게 입금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그 내역을 확인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금융기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어 2006. 3.28.현재 7,704,378원(통장사본, 자료 5)의 잔액을 보유하는 등 부과대상자가 정당하게 납부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함을 물론 공금 횡·유용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게 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대납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납할 때에는 입금의 경우 입금자와 납부의무자가 상이할 경우 신속하게 입금자의 신원을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정당하게 납부요구 한 사항이 미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출금의 경우에도 입금일자, 입금자, 입금액, 부과대상 등 출금내역을 정리한 후 내부결재 등을 통한 객관적인 확인을 거친 후 출금하여 공금의 횡·유용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현재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납완료 하시어 체납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하시는 한편, 금번 사항을 여타 부담금(과태료) 대납부서에도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7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현 황]

- 인천광역시 서구 과태료 등 체납자 재산 미압류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미압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24	65,745	274	39,705	248	26,040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416	33,590	193	15,200	223	18,390	청소행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57	10,025	41	4,775	16	5,250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법	10	1,990	4	1,690	4	300	지역경제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41	20,140	36	18,040	5	2,100	“

※ 관련년도 : 2001~2005

[위법부당내용]

○ 개별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의 경우 그 부과 및 징수절차 및 방법은 지방세법에 따른다고 각기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5조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의거 납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 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 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와 지역경제과에서는 각각의 개별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납입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힘써야 하나, 부과대상자가 영세하거나 부과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 총 248건 26,040천 원 상당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위한 재산조회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과태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에서는 각종 과태료의 미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 등의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시어 차후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금번 사항을 여타 과태료 부과부서에도 전파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8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약사법 위반업소 사법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 약사법 위반업소 처리현황

약국명	개설자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점검일시	고발일시	비 고
○○○○ 약국	○○○	가정동○○	처방전조제 내역미기재	고발	2000.11.29	2006.3.27	
○○약국	○○○	마전동○○	의약품판매 가격미기재	고발	2001.11.23	2006.3.27	

※ 2002년 서구감사시 시정조치, 2002년 미고발, 2004년 서구 감사시 지적사항 미이행

약사법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의사가 처방한 처방전에 조제내역 및 조제약사의 서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는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의 개별포장에 판매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에서는 2001년 정기약사 감사시 ○○○○○○ 약국 ○○○가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로, ○○약국 ○○○이 의약품 판매가격 미기재로 각각 약

사법 제24조 및 제50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발조치 않고 방치하다가

2002.4월 서구청에서 서구보건소에 대한 감사시 위반사항을 고발치 않고 방치한 사항을 지적하여 고발조치토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으나 서부경찰서에 고발관련 공문을 작성후 시행하였으나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사실상 미고발한 것이 되었으며

2004. 4월 서구청에서 서구보건소에 대한 감사시 위 미고발 문서에 대한 감사 처분결과 보고서를 통보하여 미고발건에 대하여 행정상 주의 및 신분상 훈계 처분,그리고 처분지시 사항으로 관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지도·점검시 적발된 사항을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법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 고발조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업무처리를 하라는 처분요구서를 받고도 위 사항을 검토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함에도 고발조치 않고 종결 처리함으로서 감사일 현재까지 미고발 되었음은 물론 위건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등 약사법 위반업소 처리관련 업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관련업무 등을 추진할때에는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9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에 관한 사항

[현 황]

총 인 원	시설관리	경비	청소	매점관리	사무보조
166	33	14	57	1	11
	수영강사	헬스강사	영양사	청소년지도사	주차관리원
	11	2	1	6	10
	노인운전원	매표원	간호사	테니스강사	사회복지사
	1	7	1	1	10

[위법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계약직직원규정 제3조(정의)에 의하면“계약직직원”이라 함은 일반직직원의 채용방법으로는 그 확보가 곤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규정 제4조(채용자격기준 등) ①계약직의 채용 자격기 준은 이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현황과 같이 청소,경비,시설관리 인력은 계약직직원규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자격 및 특수경력을 요하는 분야라 볼 수 없으며, 계약직채용자격 기준은 이사장이 정한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체

내규나 지침등은 수립하지 않고직원을 채용하고 그 채용방법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지 않고 특별채용방법으로 채용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 기획감사실장은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처분요구내용과 인사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0 ]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정비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개발행위허가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 제3 항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임목본수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와.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경사도가 30퍼센트 미만인 토지,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가 기준지반고(해발 0미터)를 기준으로 65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경우(도시지역에 한하여 적용)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임목본수도 조사방법은 지상 1.2m이상의 모든수목, 직경 6cm이상의 수목이며 조사자의 자격은 산림관련 대학연구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기술사법에 농림분야 산림기술사 등이

조사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서구에서는 위 3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신청내용에 토지현황형질변경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신청면적만 기재하여 제출되었음에도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행위허가 신청시 신청서기재등 신청내용에 의한 구비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입목본수 산정시 자격이 있는자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형질변경 여부 등 현장조사 및 형질변경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